

93-14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 分析

정기원
김만지



199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리말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외 입양이다.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도입된 1958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76,229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중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48,612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27,617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7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했고,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의 일반적인 실태와 현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여러 연구 과제들 중에서 일반 국민들, 특히 입양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임 가정 부부들의 가족 가치관과 입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입양 기관 종사자들의 입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입양 기관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입양아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해 준 전국 입양 기관의 입양 담당자들의 도움이 없었다

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연구진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연구진에게 많은 도움을 준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의 김진수과장과 주정미사무관, 중앙대 최경석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김근조교수, 성가정입양원 김도미니카원장, 홀트아동복지회 박영옥부장, 동방아동복지회 김태옥부장 등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성 우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 4 절 보고서의 구성	9
제 2 장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입양	11
제 1 절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과 서비스의 종류	11
1. 아동복지의 개념	11
2.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	12
3. <u>요보호</u>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16
제 2 절 입양의 구성 요소	31
1. 친부모	32
2. 입양아	39
3. 양부모	41
4. 입양알선기관	44
제 3 절 입양제도의 정책적 의의	46
1. 이론적 배경	46
2. 사회 서비스로서의 입양	47
제 3 장 외국의 입양제도	49
제 1 절 양자제도의 기원	49

1. 투이설	49
2. 쿨러설	50
3. 리버설	50
제 2 절 양자제도와 입양제도	51
제 3 절 외국의 입양제도	53
1. 스웨덴	53
2. 미국	57
3. 영국	59
4. 일본	62
5. 여러나라의 입양제도 비교	65
제 4 장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67
제 1 절 입양제도의 변천	67
1. 고려시대 이전	68
2. 고려시대	69
3. 조선시대	69
4. 일제시대	71
5.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	72
제 2 절 입양 실태의 추이	87
1. 입양 실적의 추이	87
2. 입양아의 성별 분포	91
3. 입양아의 발생 요인	93
제 3 절 현행의 입양제도	94
1. 입양 방법	95
2. 입양 요건	95

제 5 장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	106
제 1 절	조사 방법	106
제 2 절	개념의 정의	111
제 3 절	조사의 결과	112
1.	입양아에 관한 사항	112
2.	친모에 관한 사항	119
3.	친부에 관한 사항	128
4.	양부모에 관한 사항	131
5.	입양에 관한 일반 사항	137
제 6 장	요약 및 정책 제안	149
제 1 절	연구의 요약	149
1.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입양	149
2.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155
제 2 절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169
1.	국내 입양의 저조	170
2.	입양 정책의 빈번한 변경	171
3.	입양 관련법의 미비	175
4.	입양 사후 관리의 부재	175
제 3 절	정책적 제안	176
참고문헌		183
부 록		189

표 목 차

<표-2.1>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	13
<표-2.2>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기능	25
<표-3.1> 여러나라의 입양제도 비교	66
<표-4.1> 입양 대상 요인별 국외 입양의 실태(1955-1961년)	74
<표-4.2> 입양 실적의 추이(1958-1992년말)	88
<표-4.3> 입양아의 성별 분포	92
<표-4.4> 입양아의 발생 요인별 분포	94
<표-5.1> 입양 기관의 현황	106
<표-5.2> 입양 기관별 입양아 수	109
<표-5.3> 조사 완료율	110
<표-5.4> 국가별 입양아 수	113
<표-5.5> 입양아의 인구적 특성	116
<표-5.6> 입양 대상 요인에 따른 입양 아동의 인구적 특성	118
<표-5.7> 입양 대상 요인별 친모의 신원 확인 가능 여부	119
<표-5.8> 친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121
<표-5.9> 경제활동 중인 친모의 직업	123
<표-5.10> 친모의 가정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126
<표-5.11> 입양 대상 요인별 친부의 신원 확인 가능 여부	128
<표-5.12> 친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129
<표-5.13> 양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132
<표-5.14> 양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135
<표-5.15> 입양의 제안 및 소요 기간	137
<표-5.16> 양부모가 제시한 입양 동기의 수	139

〈표-5.17〉 각각의 입양 동기를 제시한 입양 가정의 수 및 비율	140
〈표-5.18〉 불임을 입양 동기로 제시한 입양 가정의 불임 이유	141
〈표-5.19〉 입양 가정의 친자녀 및 입양 자녀 수	142
〈표-5.20〉 입양 신청시 제시한 조건의 수	143
〈표-5.21〉 각각의 조건을 제시한 입양 가정의 수 및 비율	144
〈표-5.22〉 입양아의 성별 선호	145
〈표-5.23〉 입양 사실의 공개 여부	146
〈표-5.24〉 입양에 소요된 비용	148

그 림 목 차

<그림-2.1>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17
<그림-2.2> 가정위탁보호의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22
<그림-2.3> 미혼 여성의 임신 결과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35
<그림-4.1> 국내 입양의 절차	99
<그림-4.2> 국외 입양의 절차	100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背景과 必要性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호는 가족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선 가정이 필요하다(주커만; Zuckerman, 1983: 1-2).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의 제 17차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어린이는 가정 환경안에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3: 3)

는 내용을 최종 결의안의 전문에 싣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정이 제공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는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의 어린이들에게 대리 보호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주커만, 1983: 13).

모든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떤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를 탄생시킨 부모가 어

면 이유로¹⁾ 어린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기아), 어린이가 길을 잃어 버린 후 부모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미아).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된다.

기아나 미아에 대한 보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 순위는 그들을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엔 다른 가정에 위탁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가정에 입양시켜 새로운 가정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탁이나 입양의 경우처럼 그들을 보호할 다른 가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기아나 미아에 대한 대리 보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에서 어떤 보호의 방법이 어린이에게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스테인 등(Goldstein et al., 1973)에 의하여 제기된 ‘피해 최소 대안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자연스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리 보호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다(주커만, 1983: 27).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에(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어진 요보호 아동의 수는 5,020명에 이른다(보건사회부, 1993a: 198). 이 중에서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어 보호된 어린이는 686명으로, 전체 요보호 아동의 1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시설에 수

1) 기아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원래 가정의 해체, 미혼모에 의한 출생 등을 들 수 있다.

용되어 보호된 어린이는 3,122명으로 전체 요보호 아동의 6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1,212명(전체 요보호 아동의 24.1퍼센트)의 어린이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외 입양이다.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도입된 1958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76,229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48,612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27,617명(전체 입양아의 72.4퍼센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빙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되고 만다'(조선일보, 1990년 11월 27일자)는 논리로 요보호 아동의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대리 보호의 방법을 국내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990년초에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국외 입양을 금지하려는 입장과는 달리, 1993년 5월 29일에 채택된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의 제 17차 회의 최종 결의안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대리보호의 적절한 가정이 어린이가 태어난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때에는 국가간 입양이 영구 가정의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간 입양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사항들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의 입양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 입양을 중단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第 2 節 研究의 目的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하지만 국내 입양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보수적 가족관과 입양아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기톨릭신문, 1993년 2월 28일자)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찾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입양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1) 입양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 (2)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 (3) 현재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 (4) 현행 입양제도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답들이 찾아질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입양제도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서 입양제도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있다. 입양은 입양아, 입양아의 친부모, 그리고 입양아의 양부모를 기본 구성 요소로 하여 이루어진다²⁾.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입양아, 입양아를 출생시킨 친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입양하여 키우는 양부모 각각에게 입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게 된다.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에 관해서는 전통사회의 양자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자제도가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양자제도도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대리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의 한 방법으로 정의할 때, 그 첫째 목적을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있어 왔던 보수적 가족관에서 비롯된 ‘대를 잇기 위한’ 것에 두었던 양자제도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악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가족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자제도의 개념이 존속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개념이 국내 입양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입양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입양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

2) 입양 구성 요소에는 입양 관련 사회복지기관(입양 전문기관 또는 입양 알선기관)도 포함되지만, 입양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입양 기관의 기능을 제외시켰다.

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 특히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국외 입양이 오늘날에는 미혼모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국외 입양의 본래적 의미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을 국내에서 보호하려는 특별한 노력없이 국외 입양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입양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입양의 실태에는: (1)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국내 및 국외 입양의 추이; (2) 국내 및 국외 입양이 이루어지는 법적, 행정적, 그리고 실무적 과정; 그리고 (3) 입양 구성 요소(입양아, 입양아의 친부모, 입양아의 양부모)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파악하게 된다.

第 3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면서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 과정은 입양과 관련된 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입양의 실태는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사회조사의 결과에 바탕을 두었다.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1993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의 3개월간)에 입양 기관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모든 어린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입양아를 조사 단위 및 분석 단위로 삼았다.

사회조사의 대상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입양에만 한정시켰다. 입양특례법에서 국내 입양은 입양 기관(상담 기관 포함)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 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입양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양만이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 그리고 개인간의 입양이나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입양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조사에서는 기관 입양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의 대상을 기관 입양으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연구의 결과에도 제한점이 나타나게 된다. 근래에 와서는 미혼모의 어린이가 입양 알선 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조산소나 산부인과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배태순, 1993: 9).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입양의 경우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는 전혀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미혼모의 아기를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국내 입양의 잠재 수요가 되며, 이들로 하여금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을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국내 입양 활성화의 전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이 지니는 특수성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기관 입양으로만 한정시킬 수 밖에 없었고, 입양 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조산소나 산부인과에 의해서 입양되어지는 어린이들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었다.

이 연구가 지니는 두번째 제한점은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 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

서 찾기도 하고(장인협·오정수, 1993: 344),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혈연에 의한 가계의 승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 아의 혈액형, 용모,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보건사회부, 1991: 330).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뒷바침해 주는 자료는 찾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과 연구 인력, 그리고 한정된 연구 기간의 범위에서 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의 일반적인 실태와 현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여러 연구 과제들 중에서 일반 국민들, 특히 입양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임 가정 부부들의 가족 가치관과 입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입양 기관 종사자들의 입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입양 기관의 운영 실태 등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의 수립은 이번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第 4 節 報告書의 構成

이 보고서는 모두 6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1장은 현재의 입양제도 및 실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가 지니는 자료상의 한계점과 대안 제시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연구의 한정된 범위도 제시함으로써 보고서의 서론으로 삼았다.

제 2장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입양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과 이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입양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해서는 입양 구성 요소 - 입양아, 입양아의 친부모, 그리고 입양아의 양부모 - 각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으며, 입양제도가 지니는 정책적 의의도 살펴 보았다. 제 3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입양제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외국의 입양제도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기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입양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입양되고 있는 미국, 스웨덴, 그리고 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민법의 내용이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양제도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 4장과 제 5장은 우리나라의 입양 실태를 다루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변천되어 온 과정을 기술하였는데, 전통적으로 관행되어 온 양자제도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제도의 변천도 포함시켰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는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정부의 입양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양 추이와 현행 입양제도의 특성도 제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입양 추이에 대해서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난 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176,229명의 어린이들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입양의 추이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입양의 실적 뿐만 아니라, 입양아의 성별 구조와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현행 입양제도의 특성에 관한 기술에서는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 5장은 입양 기관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사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고,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입양에 관한 일반적 사항, 입양아에 관한 사항, 입양아의 친부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양아의 양부모에 관한 사항 등을 입양 국가 또는 입양 대상 요인별로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입양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양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책 제안으로 실었다.

第 2 章 兒童福祉 서비스로서의 入養

第 1 節 兒童福祉의 主要 對象과 서비스의 種類

1. 兒童福祉의 概念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며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들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사회사업 연감: Social Work Yearbook, 1960; 장인협·오정수, 1993: 13-1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의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전문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제1조).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이 현대사회에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주로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국가의 사회정책 수립에서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천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편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선택주의적 입장의 개념에서는

아동복지는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서비스는 부모들이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들을 지지, 보조, 혹은 대리하거나, 혼존

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조직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두신: Kadushin, 1974; 장인협·오정수, 1993: 13에서 재인용)

라고 아동복지률 정의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을 아동복지의 우선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회사업 백과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65)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아동복지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자는 전체 아동들의 복리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복지자는 특별히 최상의 발달을 가로 막는 그들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상태하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동복지률 선택주의적 입장에서 정의할 때,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의 어린이는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대상에 포함된다.

2. 兒童福祉의 主要 對象¹⁾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는 요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실천되기 때문에(아동복지법 제1조), 모든 어린이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복지논

1)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부분은 장인협·오정수(1993: 127-240)를 간추려서 실었다.

어린이의 기본 권리가 현재 침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는 <표-2.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2.1>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

대상	구분	내용
	양육 환경상의 문제 아동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 아동, 부모부재 아동
요보호 아동	장애 아동 사회적 및 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신체장애 아동, 정서장애 아동, 정신장애 아동 기출 아동, 비행 아동
	특별 보호를 요하는 아동	피학대 아동, 유기 아동, 미혼모의 아동
일반 아동	일반 건전 아동	근로 청소년, 농어촌 아동

주: 장인협·오정수(1993: 127)에서 옮김.

(1)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모든 어린이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린이의 양육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있는 가정의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양육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양육 기능을 상실하거나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모자가정의 아동이 포함된다.

- ①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어린이를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어린

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 부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부모가 장기 구금된 때, 그리고 부모가 장기간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지니고 있을 때에 발생된다.

② 모자가정의 어린이: 아버지가 없이 편모의 결손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를 말한다. 모자가정의 어린이는 정서적인 안정의 상실, 교육을 받을 기회의 상실, 그리고 동일화 대상의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기가 쉽다.

(2) 장애 아동

장애 아동들은 그들이 지니는 독특한 심신의 결함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참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기가 쉽다. 그리고 장애 아동들은 부정적 자아 개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문제도 지니기가 쉽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정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는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를 따를 경우, 장애 아동은 신체장애 아동과 정신장애 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신체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말한다.

② 정신장애 아동: 정신장애 아동에는 정신발달의 지체로 인해서 지적 기능이 자기 또래 집단의 평균 이하이며, 어느 정도의 사회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많은 사회 활동, 교육이나 직업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 위치에 서기에는 곤란한 정신박약 아동과 정서적 갈등을 갖고서 그 자신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는 정서장애 아동이 포함된다.

(3) 사회적·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현대 산업사회의 성립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도 현대화되었는데, 현대 가정의 특징으로는 가족 규모와 기능의 축소, 그리고 가족 관계의 평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 때문에 가족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의 현상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이탈이 많아지게 되었다. 가족들로부터 이탈되어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가족 이탈에서 비롯되는 요보호 아동은 가출 어린이와 비행 어린이로 구분할 수가 있다.

① 가출 아동: 어린이를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정으로부터 어린이가 스스로 이탈되어 나온 경우를 말한다.

② 비행 아동: 일반적으로 비행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거나, 아니면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 말한다. 법령에서는 범죄 소년, 촉범 소년, 그리고 우범 소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4) 특별 보호를 요하는 아동

어린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어린이의 부모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 대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국가나 사회가 그들의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양육 및 보호의 기회를 어린이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미혼모는 모성의 역할에서 많은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회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① 유기된 어린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거부당하거나 방치되어진 경우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기되는 종류에는 성장 실조, 신체적 유기, 의료적 유기, 교육적 유기, 그리고 정서적 유기 등이 있다.

② 학대받는 어린이: 가정의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받는 경우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떠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며 완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 행위는 좁은 의미로서의 학대가 되는데, 요보호 아동에는 좁은 의미로서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비신체적인 정서적, 심리적, 성적, 그리고 사회적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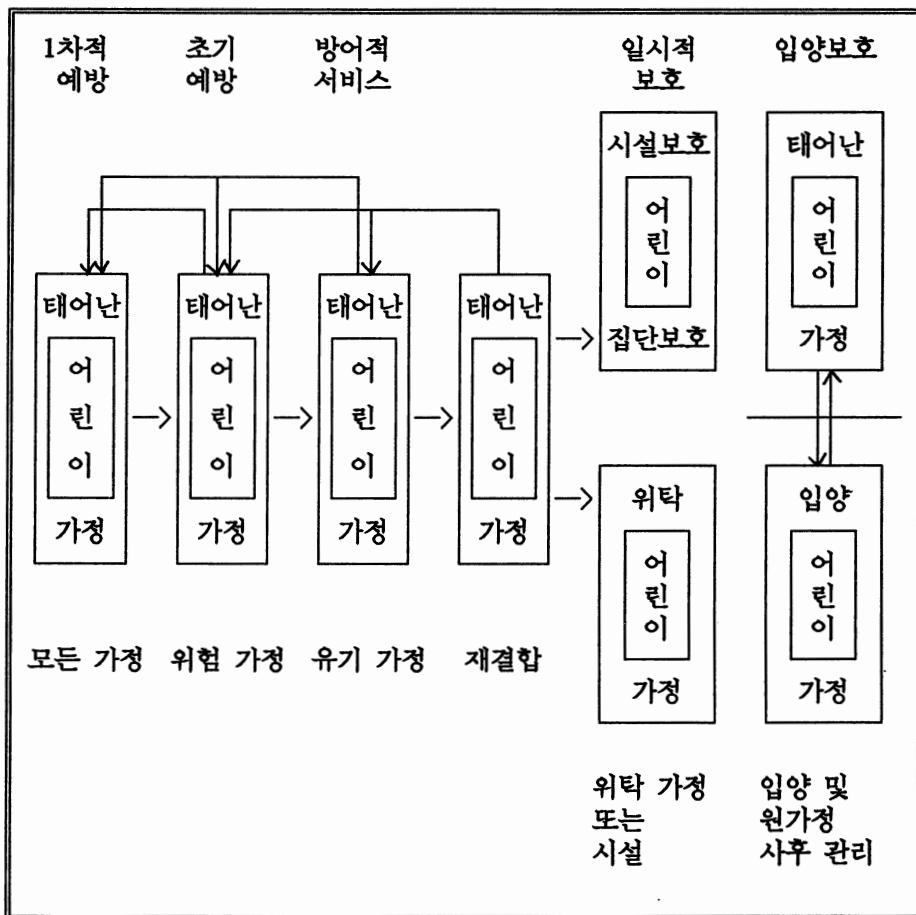
③ 미혼모의 어린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말한다.

3. 要保護 兒童에 대한 兒童福祉 서비스의 種類

아동복지 서비스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장소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가정외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다. 주커만(Zuckerman, 1983: 26-31)은 가정이 어린이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일차적인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가 충족될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방어선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본가정에서의 1차 방어, 대리 가정에서의 2차 방어, 그리고 수용시설에서의 3차 방어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복지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분류하든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내용은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과 수용시설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된다. <그림-2.1>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내용이 위치하게 되는 연속선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2.1>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주: 레어드·하트만(Laird and Hartman, 1985: 564)에서 옮김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첫째 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태어난 가정이 어린이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위기에

놓이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유지, 그리고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양육 및 보호의 의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린이의 태어난 가정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어린이의 양육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있는 가정의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양육 기능을 상실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 가정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리 가정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시설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기 아동(neglected), 학대 아동(abused)에게 대리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지 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배타적인 기능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제1차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본래 가정에서의 서비스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 가정 서비스와 3차 방어선으로서의 수용시설 서비스에 한정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 가정 위탁 보호(Family Foster Care)²⁾

1) 위탁 보호의 의의

어린이가 생물학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2) 종래에는 '위탁 가정 보호(foster family car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국가 가정 위탁 보호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Foster Care: 1991)는 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족이 지니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탁 가정 보호(foster family care)' 대신에 '가정 위탁 보호(family foster car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페코라 등: Pecora et al., 1992: 333).

자라날 때,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가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물학적인 부모가 어린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신 해서 그 어린이를 돌보아 주어야만 한다.

위탁 보호는 ①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 예를 들면 어린이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지체, 정서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일탈 등이나, 또는 ②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 예를 들면,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별거했을 때, 부모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 있을 때, 부모가 어린이를 유기 또는 학대할 때, 그리고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모자랄 때 등(복지연구회, 1984: 65; 장인협·오정수, 1993: 328)으로 인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어린이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위탁 보호는 위탁되어지는 가정의 종류에 따라서, 가정 위탁 보호(family foster care), 소집단 보호(group homes care), 그리고 집단 보호(residential care)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페코라 등: Pecora et al., 1992: 3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정 위탁 보호만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정 위탁 보호는,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한 시적으로 계획된 대리 가정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리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브루멘탈: Blumenthal, 1983: 296; 페코라 등, 1992: 321에서 재인용)

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① 가정 위탁 보호는 종합적인 가정 지원 서비스로서, 가정이 아동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② 가정 위탁 보호는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된다. 다시 말해, 가정 위탁 보호의 첫째 목적은 단지 대리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③ 대부분의 어린이들에 대하여 가정 위탁 보호는 한시적으로만 제공되는데, 이는 어린이가 영구히 대리 보호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④ 가정 위탁 보호는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안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져야 한다.

(페코라 등, 1992: 321)

등으로 정리된다.

2) 가정 위탁 보호의 종류

복지연구회(1984: 66-67)는 위탁 보호를 하는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위탁 양육 가정(Boarding Homes): 위탁받은 가정이 어린이의 보호를 위탁하는 부모나 사회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를 보호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어린이가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영구적인 가정 생활이 필요하지만 입양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의 장기 위탁 양육 가정

(Long-term Boarding Homes)과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고 행동이 불안하지만 가정 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를 아주 높은 인격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적 위탁 가정(Specialized Foster Family Homes)도 포함된다.

② 무료 위탁 가정(Free Homes):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어린이를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작업 위탁 가정(Work Homes): 어린이가 그들의 숙식비를 벌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한다는 계약하에 위탁 보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임금 위탁 가정(Wage Homes): 어린이가 숙식비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도 벌 수 있으면서 위탁 보호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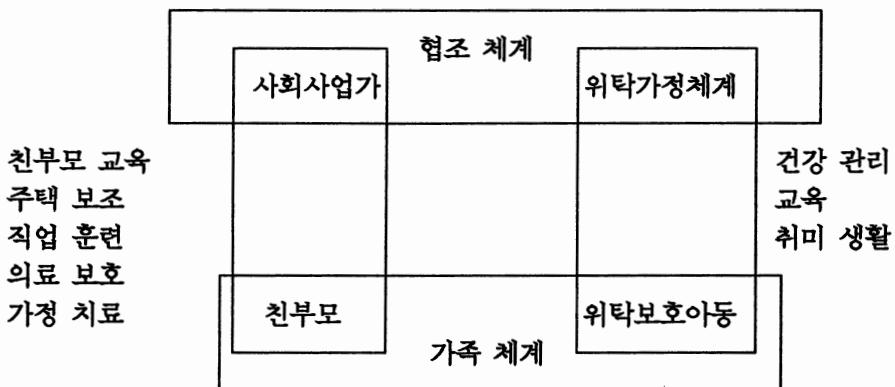
3) 가정 위탁 보호의 구성

가정 위탁 보호는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가정 보호는 어린이의 위탁 보호를 의뢰하는 친부모, 위탁 보호되는 어린이,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그리고 가정 위탁 보호의 과정을 연결하는 아동복지 기관 등을 요소로 하여 구성된다. 입양과는 달리 가정 위탁 보호되는 어린이는 일정 기간의 대리 보호를 받은 후에 친부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정 위탁 보호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기능의 분담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한다. 가정 위탁 보호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그림-2.2>로 표시하였다.

4) 우리나라 가정 위탁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두 가지 형태의 가정 위탁 보호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시설 아동을 태어난 가정에 복귀시키고 구호

〈그림-2.2〉 가정 위탁 보호의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주: 맥파던(McFadden, 1985: 588)에서 옮겨와 재구성

를 제공하여 주는 거택 구호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시설 아동을 적당한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위탁 사업이다(장인협·오정수, 1993: 332). 위탁 사업의 경우는 어린이가 고용되어 위탁되는 고용 위탁, 무료로 위탁 보호되는 무료 위탁, 그리고 시설이나 국가가 위탁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 위탁 등으로 구분된다(보건사회부, 1991: 330).

우리나라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속에서 정서적 인격 형성으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보건사회부, 1991: 330-331), 인천 직할시와 광주 직할시에서 198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가정 위탁 보호는 대개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되어지기 전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설 보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 위탁 보호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인협·오정수(1993: 333)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위탁 보호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①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② 경제적 불안정, ③ 주거 공간의 부족, ④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의 미비, 그리고 ⑤ 위탁 보호에 관한 전문 사회사업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를 억제하고 가정 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 위탁 보호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

1) 시설 보호의 의의

어린이가 가정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또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오히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 조치로서 시설 보호를 하게 된다. 시설 보호를 통해 어린이는

- ①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 ② 개인 습관을 규칙화하고,
- ③ 규칙적이고 균형된 생활을 영위하고,
- ④ 어른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생활 태도를 배우며,
- 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꾸며, 그리고
- ⑥ 집단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적 수용을 획득하여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장인협·오정수, 1993: 349).

2) 시설 보호의 종류

- ①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 for Children: IC): 행동이나 정서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부모가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없는 경우의 어린이, 그

리고 가정에서 벗어난 집단 생활의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제 12조)에 의거하여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때 이용되는 아동복지 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기능을 <표-2.2>에 정리하였다.

② 특수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 for Children-Residential Treatment: RT*): 특히 정서적으로 심한 장애를 보여 친부모나 다른 가정, 또는 일반적인 아동복지 시설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집단생활을 통한 훈련과 개인적으로 마련된 계획표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다.

③ 소집단 보호(*Group Home Service: GH*): 아동복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소규모의 어린이를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된다는 원칙아래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 수용되는 어린이의 수를 5명 안팎으로 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3) 시설 보호의 문제점

시설 보호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시설 보호를 통해 제공된 사회 서비스가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어린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 보호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방법론상의 제한으로 연구의 결과에 신뢰도와 유효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설 보호의 문제점으로는, ① 과도하게 고정된 생활, ②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제한, ③ 교우나 사회생활의 제한, ④ 경제적 경험에 대한 기회의 제한, 그리고 ⑤ 정서적 욕구의 불충분한 발산 등이 지적된다(장인협·오정수, 1993: 349).

〈표-2.2〉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기능

종 류	기 능
아동상담소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한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 환경의 조사 아동복지 시설 또는 <u>요보호</u> 아동의 조사, 지도 및 감독 아동의 일시 <u>보호</u>
영아 시설	<u>보호</u> 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u>보호·양육</u>
육아 시설	<u>보호</u> 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을 <u>보호 및 양육</u>
아동 일시 <u>보호</u> 시설	가출 아동, 부랑 아동 기타 <u>요보호</u> 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u>보호</u> 가출 아동, 부랑 아동 기타 <u>요보호</u>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 대책 및 기타 보호 조치 강구
아동 직업 보도 시설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교육
조산 시설	<u>요보호</u>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아동전용 시설	건전한 놀이 및 오락, 기타 편의 제공
교호 시설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선도
아동 입양 위탁 시설	입양 또는 위탁 보육
정서장애아 시설	정서장애 아동의 <u>보호</u>
자립지원 시설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자립 지원
탁아 시설	<u>보호</u> 자가 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 기 어려운 경우에 <u>보호</u> 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

특히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한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 제도에서는

- ① 성격 형성을 위한 오락이나 집단 경험의 결여,
- ② 아동 분류의 부적절,
- ③ 교육적 대책, 특히 직업 훈련의 불비,
- ④ 시설 인가, 감독, 실제 지도면의 부족,
- ⑤ 인사, 재정, 감독 절차 등의 행정적 미숙,
- ⑥ 세심한 조사를 통한 입양이나 위탁 서비스의 불비,
- ⑦ 훈련된 직원의 부족, 그리고
- ⑧ 불충분한 지역사회 지원 활용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장인협·오정수, 1993: 352). 시설 보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어린이는 가정 환경안에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3: 3)는 원칙을 고려할 때, 국내 입양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며,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 다른 가정에서 조차도 양육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적인 환경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선 소집단 보호 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3) 입양(Adoption)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미잔: Meezan, 1983: 425; 카두신과 쥬디스: Kadushin and Judith, 1988: 533에서 재인용).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 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법률상의 친자 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중천선지조(中川善之助, 1965; 김창희, 1985: 7에서 재인용)는 양자 제도가 생겨나고 지속되어지는 이유를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와 동기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가족적 영속의 욕구인데, 인간은 가족의 계승을 통하여 스스로의 영속을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혈연의 단절로 인하여 가족이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의제 장치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양자제도이다. 둘째의 동기는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에서 찾아지는데, 봉건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양자제도는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부모의 개인적 욕구가 가계의 영속에 대한 욕구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양자제도는 성서에서 찾아지는데,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입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콜: Cole, 1985: 638). 희랍과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자제도는 유산을 상속하고 가세를 늘리기 위하여 유지되었고, 동양 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양자제도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모두 어른을 위한 양자제도일 뿐이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입양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콜, 1985: 639) .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아동복지의 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입양제도가 단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입양이 갖는 기능은,

- ①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 관계를 갖게 한다.
 - ②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③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 ④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 ⑤ 자녀를 양육 및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 ⑥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 (카두신; Kadushin, 1980: 465-466; 복지연구회, 1984: 49에서 재인용)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양부모에게도 이익을 주고 있으며, 자연의 혈연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친부모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바스; Barth, 1992: 361). 입양을 통하여 양부모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얻게 되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앞에서 얘기한 인간의 본래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된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입양이 ‘대를 잊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입양이 양부모의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입양제도는 어린이의 친부모에게도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미혼모들은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은 친부모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또한 안정된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준비되지 않은 친부모에게서 양육되는 것보다 더욱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2) 입양의 종류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입양의 형태를 전통적인 사회에서 발전된 양자제도와 아동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입양제도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바스, 1992: 362-363).

① 독립적 입양(Independent Adoption): 독립적 입양은 친부모가 직접 입양 가정을 선정하여 어린이를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자제도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입양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의붓어버이 입양(Stepparent Adoption): 의붓어버이 입양은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는 것이다. 의붓어버이 입양은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하던 어린이가 새로운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서 호적상의 내용이 바뀌지만 여전히 친부모 중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입양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국가간 입양(Intercountry Adoption): 국가간 입양은 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 중에서 약 70퍼센트 가량이 국외 입양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외국의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을 뿐 외국의 어린이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④ 기관 입양(Agency Adoption): 기관 입양은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특례법에서 기관 입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알선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복리 시설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시설 등의 법인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운영되는데, 미혼모의 어린이나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는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적인 입양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서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내의 보호 시설이나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가정에 이들을 입양시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양은 국외 입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은 거의 없어지고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어린이가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에도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 아래서 우리나라는 1992년말 현재까지 모두 176,229명의 어린이를 국내 및 국외의 가정에 입양시켰다. 그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127,617명(72.4퍼센트)이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는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 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서 찾기도 하고(장인협·오정수, 1993: 344),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혈연에 의한 가계 승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혈액형, 용모,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보건사회부, 1991: 330).

이처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입양 대상 아동을 국내의 가정에서 입양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입양의 대부분을 외국의 가정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불명예는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를 지키지 못(해)…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빙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조선일보, 1990년 11월 27일자). 이에 정부는 1990년초에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第 2 節 入養의 構成 要素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입양 알선 기관은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정서적, 사회적,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입양은 입양 대상 아동을 태어나게 한 친부모, 입양 대상 아동을 입양해 가는 양부모, 그리고 입양되어지는 입양아의 세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입양 알선 기관이 세 주체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사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친부모, 입양아, 양부모, 그리고 입양 알선 기관을 입양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1. 親父母(Birth Parents)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입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으로, 이때의 입양은 주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보호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손의목, 1988; 탁연택, 1986). 하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입양의 대상은 주로 기아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의 입양 대상 아동은 상당 수가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되어 지고 있다.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하는데(사회사업 백과 사전: The Encyclopedia of the Social Work, 1965: 797; 허남순, 1986: 110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84: 31)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미혼모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혼전이나 또는 혼외의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의 결과를 분만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인공유산을 한 여성은 모두 미혼모로 정의하는데 대해서 허남순(1986: 110)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갖은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정의하여 보다 협의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으며,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혼전이나 혼외의 임신을 경험 중인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임신의 결과로는:

- ① 임신중인 아기를 분만하기 전에 결혼을 하여서 임신의 결과가 합법적이 되도록 하든지;
- ② 인공유산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든지;
- ③ 임신중의 아이를 분만하여 스스로 양육하든지; 아니면,
- ④ 분만한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여 다른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레이보위츠 등: Leibowitz et al., 1986; 백래취 등: Bachrach et al., 1992; 칼무스 등: Kalmuss et al., 1992; 맥라프린 등: McLaughlin et al., 1988; 쿡세이: Cooksey, 1990).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입양은 혼전 또는 혼외 임신의 인공유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최근의 정책들이 미혼모로 하여금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에 대하여 인공 유산보다는 입양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칼무스: Kalmuss, 1992: 485; 칼무스 등: Kalmuss et al., 1992: 81).

미혼모가 되는 원인이나 미혼모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1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승권(1992)이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 중에서 3.4퍼센트가 임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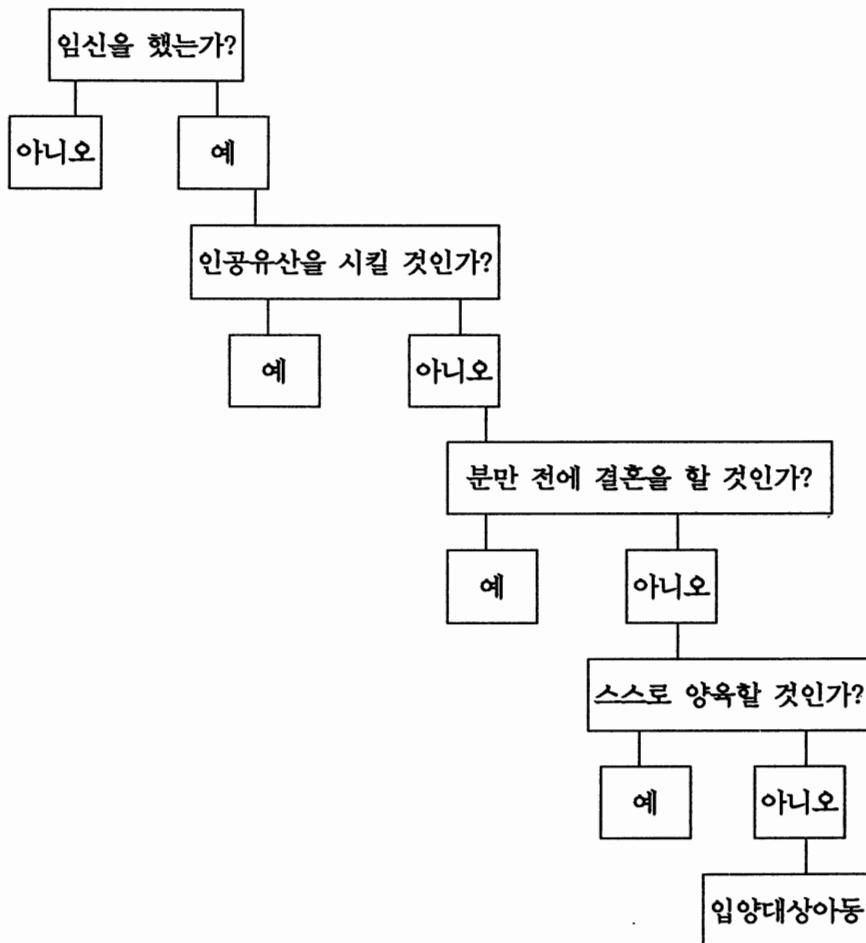
서구사회의 성해방에 대한 진보적인 조류가 우리사회에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이성교제의 기회가 늘어 나고, 또한 성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많이 약화되면서 미혼모의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개발원, 1984; 허남순: 1986). 미혼모의 발생 요인을 한국여성개발원(1984)과 허남순(1986)은 미혼모가 지니고 있는 개인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발생 요인에는 결손 가족과 개방적인 성태도 등이 포함된다.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을 만들기 때문에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을 방지하는 것은 입양과 관련한 정책의 가장 주된 관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지는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자신이 낳은 아기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양육 보호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기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양육되기를 원하는 친부모는 과연 입양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미혼모의 개념에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 포함시키고, 미혼모의 임신 결과에 대한 여러 선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엔 먼저 임신의 결과를 인공 유산과 분만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고, 만약 분만으로 임신의 결과를 마감한 경우엔 태어난 아기를 스스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양육 보호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그림-2.3 참조).

<그림-2.3> 미혼 여성의 임신 결과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주: 그림의 일부는 런드버그·플롯닉(Lundberg and Plotnick, 1990: 247)에서 옮겨 옴.

임신 중인 미혼모가 아기를 분만하기 전에 결혼을 하여 아이의 출산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결혼의 질이나 결혼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가 외국의 경우에는 가끔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인공 유산 대 분만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을 한 여성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선택의 종류는 인공 유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유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미혼모의 인공유산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승권(1992)은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위해 표본 추출된 11,540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은 임신을 했을 때 84.8퍼센트가 인공 유산을 시켰으며, 분만을 한 경우는 15.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완료된 1,514명의 미혼여성 중에서 임신을 경험한 51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을 경험한 미혼 여성들의 인공유산율이 84.8퍼센트인데 비해서 미국의 자료에서는 인공 유산의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79년도에 실시된 ‘전국 청소년 종단 조사(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의 결과를 이용하여 플롯닉(Plotnick, 1992)은 임신을 경험한 14-16세 사이의 여성들 중에서 39퍼센트가 인공 유산을 시켰으며, 29퍼센트는 미혼인 상태로 아기를 분만하고, 그리고 나머지 32퍼센트는 분만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 밝혀지는 인공 유산의 비율은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낮다(플롯닉, 1992: 80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경험한 미혼 여성들의 인공유산율은 84.8퍼센트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혼 여성이 분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미혼 여성들이 임신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중인 미혼 여성은 임신의 결과를 인공 유산으로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태아를 분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는 인공 유산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런드버그·플롯니, 1992),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쿡세이(Cooksey, 1990)는 미혼모의 연령,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형제 관계,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등이 미혼모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미혼모가 임신의 결과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1984)은 미혼모의 72.3퍼센트가 임신의 결과를 인공유산으로 끝맺음하는 것으로 밝힐 뿐, 분만과 인공유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2) 분만 대 친권의 포기

미혼모가 임신의 결과를 분만으로 처리한 경우에 미혼모는 태어난 아기를 스스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아기에 대한 친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가 분만을 하여 아기를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국여성개발원(1984)의 연구에서는 분만 예정인 미혼모의 2.7퍼센트만이 아기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부인회(1992)가 1992년에 실시한 '미혼모 실태조사'에서는 미혼모의 23.8퍼센트가 아기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조사의 결과에서 스스로 아기를 키우겠다는 미혼모의 비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가 실시된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조사의 방법에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한국부인회(1992)는 그들이 실시한 1984년의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미혼모들 중의 42퍼센트가 스스로 아기를 키우겠다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 임신의 결과를 인공 유산과 분만으로 끌 땗음하는 경우에 어느 방법이 과연 미혼모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정책들에서는 미혼모가 임신을 한 경우 인공 유산보다는 분만을 하여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시키는 것이 미혼모, 아기, 그리고 양부모 모두에게 좋다고 제시하고 있다(바취락 등; Bachrach et al., 1992).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스스로 아기를 키우는 경우와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여 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를 비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때까지의 논쟁에서는 미혼모가 아기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여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미혼모 스스로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맥라프린 등; McLaughlin et al., 1988). 미혼모가 아닌 다른 가정에서 어린이를 양육함으로써 미혼모가 겪는 경제적 및 정서적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스스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이거나, 아니면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그러나 미혼모가 아기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의 문제점에는 미혼모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향후의 출산 행위의 불안정, 그리고 결혼 생활의 파탄 등이 포함되고 있다(맥라프린 등, 1988). 미혼모가 아기를 분만하여 스스로 키우는 경우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각각 미혼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칼무스 등(Kalmuss et al., 1992)의 연구에서는 입양을 보낸 미혼모가 스스로 양육하는 미혼모에 비해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후회를 많이 하나, 사회경제적으로는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고통의 면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

2. 入養兒(Adoptive Child 또는 Adoptee)

입양은 입양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및 사회적 절차다.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제2조 제1항)에서는 입양이 될 수 있는 아동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의뢰한 자
- ②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 의뢰한 자
- ③ 법원에 의하여 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 의뢰한 자
- ④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이처럼 규정되는 어린이는 결국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가 없고, 사회에서 제공하는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양육될 수 밖에 없다.

한 어린이가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과정은 어린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데,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만약 태어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어린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때에도 어린이가 한 인격체로서 지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이 갖는 여러 권리 중의 하나는 자신의 태고난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관해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이다(배태순, 1990: 77). 이는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이며, 또한 존재적 지속성을 위한 욕구가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배태순(1990: 77-78)은

입양 부모가 입양아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입양부모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입양아에게 그의 진정한 유전적 기원과 혈통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혈통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이자 권리이며, 입양아라고 해서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 부모의 희망에 의하여 입양 기관이 입양의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입양 부모는 마치 자신이 낳은 것으로 가장하여 입양아의 유전적인 배경(혈통, 근원)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태고난 유전적 배경을 알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라고 주장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아동복지의 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선 입양의 첫째 목적이 어린이의 건전한 인성 개발에 주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입양아가 입양 가정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라난 경우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라난 경우가 어린이의 인

성 개발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는 없다. 만약 입양아가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친자라는 인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린이의 인성 개발에 좋다고 했을 때에는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인성의 건전한 개발이라는 입장은 서로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이 친자로 입적되는 국내 입양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입양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3. 養父母(Adoptive Parents 또는 Adopters)

입양을 통해 양부모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혈통에 의하지 않은 입양아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아동복지의 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통하여 양부모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얻게 되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양부모의 가족적 영속에 대한 욕구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된다.

양부모는 입양을 통해 자신들이 입양아에 대한 정당한 보호 양육권을 갖는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법적 및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특례법(제3조)에서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 ①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②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③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

지 아니할 것

- ④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양부모가 될 사람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아동상담소 또는 아동 입양 위탁 시설의 장
- ③입양 알선 기관의 장
- ④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3조).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의 선정에 있어서 아동복지 연맹(th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78: 59; 콜: Cole, 1985: 670-671에서 재인용)이 정하고 있는 입양 서비스의 기준(Standards for Adoption Service)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는 입양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인성의 개발과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양부모의 종합적인 인성, 정서적 성숙도, 결혼 생활의 질, 어린이에 대한 감정, 입양에 대한 준비 정도, 그리고 입양의 동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카두신(Kadushin, 1974; 김학주, 1988: 138에서 재인용)은

- ① 양부모의 연령은 35세부터 45세까지가 적절하다. 이는 아동이
독립할 때까지의 양육 보장과, 양육 과정에서 가능한 세대차
감소와 정상 가족과 유사한 가족 상황으로 만듬으로써 다른 가

족과의 차이에서 오는 주의와 집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양부모는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의 안정 확보 및 친자를 낳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결혼한 지 3년에서 5년을 경과한 부부여야 한다.
- ③ 입양아와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임부부가 더욱 적합하다.
- ④ 친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으면 좋다.
- ⑤ 아동 양육이 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요구된다.
- ⑥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 ⑦ 부모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⑧ 불임문제에 대해 적응된 이후여야 한다.
- ⑨ 의사 소통 관계, 성역할 등 부부 관계가 만족스러워야 한다.
- ⑩ 입양의 동기가 공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등을 양부모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간에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다.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 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법률상의 친자 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 양부모와 입양아간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기 쉽다. 이러한 까닭에 양부모의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정당성의 확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4. 入養 幹旋 機關(Adoption Agency)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970년대까지 친부모, 입양아, 그리고 양부모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던 미국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데(콜, 1985: 664),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나 혼혈아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입양 알선 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입양 가정을 선정하여 배치해 주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학주(1988: 139)는 입양 알선 기관의 역할에 대해

- ① 아동·양부모·친부모들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친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입양 여부를 결정하며, 입양이 최선의 방법인지의 여부를 친부모가 결정하도록 개입한다.
- ② 입양 대상 아동을 전문가적 이론과 경험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③ 양부모 가정을 선별한 후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④ 입양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 개선에도 기여한다.
- ⑤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고취시켜 입양이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등과 같이 적고 있다. 이처럼 입양의 과정에서 입양 알선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제10조)에서는 입양 알선 기관의 설립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 알선 기관의 허가 기준을 입양특례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아동상담원, 의사(족탁 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및 사무직원
을 둘 것
- ② 상담실의 시설을 갖출 것
- ③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영아 시설 또는 육아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을 갖출
것

아동복지 서비스의 여러 분야 중에서 입양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비용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콜, 1985: 6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선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전혀 재정적인 보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입양 알선 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후원금과 양천될 자로부터 보상받는 ‘입양 알선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서의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第3節 入養制度의 政策的意義

1. 理論的 背景

입양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복지 정책을 보는 입장에 따라 전통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원영희, 1990: 5-11). 전통적 접근에서는 입양 정책을 자유 및 평등으로 추구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복지 정책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사회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입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에게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①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 ② 궁정적인 정체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 관계, ③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생산 활동에의 참가, ④ 안전, 그리고 ⑤ 자기 실현 등을 포함하고(길: Gil, 1985: 25), 이러한 요구는 가정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입양 정책은 어떤 이유로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을 때, 이들에게 그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 주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된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입양 정책을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나 국가의 노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혼모의 문제,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자녀 가정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되는 사회 정책 중의 하나가 입양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남기민 등, 1984: 267).

입양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실천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르크시즘에 바탕을 두는 주장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고, 또한 자본에 대한 반대 세력의 투쟁에 대해 자본의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양보를 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피치오

토·할리웨이, 1985; 원영희, 1990: 9에서 재인용).

입양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주로 국가간의 입양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국가간 입양을 어린이의 국제적 교역으로 취급하는 저개발 이론이 대표적이다. 국가간 입양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저개발 국가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로 나타나고, 이때 어린이는 상품화되어 수출품이 된다는 주장이다(파스칼: Pascall, 1984: 18-20).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얻게 된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도 결국은 입양 정책을 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2. 社會 서비스로서의 入養

아동복지의 주요 과제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 권리의 보장에 주어진다. 아동권리의 기본적 요소는 실천지향적 권리와 선언지향적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실천지향적 권리에는 어린이가 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②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최상의 건강 상태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④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적절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⑥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⑦ 특수장애 아동의 경우,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선언지향적 권리에는 모든 어린이가 ①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②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③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④ 인류의 자유와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육될 권리 등이 포함된다(장인협·오정수, 1993: 40-43).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 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로서 아동복

지의 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는 프레드릭슨(Frederikson, 1948)과 카드신·쥬디스(Kadushin and Judith, 1988)이 아동복지권으로 제시하는 모든 어린이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 가정 생활을 누릴 권리,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로서 입양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원영희, 1990: 12). 따라서 입양 정책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第3章 外國의 入養制度

第1節 養子制度의 起源¹⁾

일반적인 양자제도의 기원적 형태는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족학자들이 민족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미개 사회에서의 입양의 형태에서 입양제도의 기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루이(Lowie)說

루이는 미개 사회에 있어서 입양의 관행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심리 상태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개인의 일반적 심리에는 혈육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이 매우 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입양된 어린이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애정으로 양육된다. 따라서 미개 사회에 있어서의 입양 동기나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고 유추된다.

인디안의 경우엔 자기의 자녀가 사망하면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고아를 죽은 자기 자녀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자녀가 입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시베리아족은 친족의 남자를 양자로 하는 관습이 있고, 그리고 양자로 된 남자는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달된 사회에서 사후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양을 하고 있는 전통을 보여 주고 있다.

1) 양자제도의 기원에 대한 민족학자들의 주장은 이봉(1976: 14-16)을 간추려서 정리했다.

동토오레스 해협의 한 섬에서는 어린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되고, 태어난 후에는 다른 가정으로 옮겨져 다른 부모에 의해 양육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서로 상호 교환 형식으로 어린이들을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서로 다른 가족들간의 결합을 긴밀히 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에 대해 리버(Rivers)는 ‘광범위하게 양자가 행하여 지고 있다는 것은 문명인에 대하여 비문명인은 친자 관계에 대한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2. 콜러(Kohler)說

콜러는 군혼제도에서는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입양제도가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혼인 집단 전체에 소속된다. 그러나 이 아기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집단 안에서의 객관적 사정과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서 한 명의 여성에게만 주어진다. 집단 모성의 시대에는 모자 관계가 자연적으로 정하여지기도 했으나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은 양자의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양자제도의 기원을 집단혼과 관련하여 찾을 수도 있으나, 종교적인 해석에서 양자제도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사람은 어린이의 혼을 부모의 혼과 결합시키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상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집단과 결합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자기 조상의 제사 장소를 떠나 다른 가족의 제사 단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세례식에 의한 양자가 된다.

3. 리버(Rivers)說

리버는 메라네시아의 뱅크(bank) 제도와 모다(moda) 제도의 양자 관행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아기의 아버지는 아기가 태어날 때 둘째 준 조산원

에게 사례비를 지불한 사람이 된다. 이때 조산원은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선정하며, 사례비가 적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어린이를 보호할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당하기도 한다. 아기의 이유 시기 동안에 아기는 친부모와 있고 이 기간의 양육 비용을 양부모가 부담하며, 양부모는 그 후 2회에 걸친 사례비를 지불하게 된다. 이 지불로 인해서 아기와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第 2 節 養子制度와 入養制度

양자란 혈연적 또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합의에 의하여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녀로 되는 인위적이고 의제적인 경우를 말하는데(김창희, 1985: 7), 이 때 사회에서 받아 들여지는 합의의 내용을 양자제도라고 한다. 이처럼 양자제도는 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인위적인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에서 입양제도에 대한 사회의 합의 내용을 찾기도 한다.

양자제도가 발생되고 지속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인간이 지니는 가족 영속에 대한 욕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구이다. 가족 영속의 욕구가 원인이 될 때에는 혈연의 단절로 인하여 가족이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 장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양자제도가 생겨났다고 본다. 그러나 봉건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도 양자제도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인간에게는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창희, 1985: 7-8).

양자제도는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자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원적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혈육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신분 연결 형태로 양자제도를 채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양자제도를 제사 승계를 위한 양자 또는 가계 승계를 위한 양자라²⁾ 한다.

제사 승계 또는 가계 승계를 위한 양자제도는 대가족적 공동 생활 형태에서 보이던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사람을 위한’ 양자제도로 바뀌게 된다. 비록 ‘사람을 위한’ 양자제도라고 하나, ‘사람’이 의미하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인 양자제도의 전기적 형태에서는 양부모를 위한 위친 양자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³⁾, 그리고 후기적 형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위자 양자제도의 모습을 떤다. 위친 양자제도는 부모의 이익이 입양의 주된 동기가 되는데 반해서, 위자 양자제도에서는⁴⁾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교육과 양육이 입양의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위자 양자제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과정에서 생겨 난 고아, 기아, 빈민아 또는 혼인 외의 자와 같이 부조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사회 정책적 동기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로서의 입양제도는 전통적인 양자제도와 뚜렷이 구분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입양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2)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조상의 제사 및 혈육의 결속을 도모하여 위하여 인위적인 신분 결합 형태인 양자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였다.

3) 양친 본위의 양자제도에서는 조상의 제사 및 혈육의 계승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또는 노후의 경제적 후원을 받기 위하여 양자를 선정한다.

4) 양자 본위의 양자제도를 근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라 할 수 있다.

第3節 外國의 入養制度

입양제도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현대적 제도로 부활 또는 채택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의 과정에서 많은 기아, 미아, 그리고 사생아가 생겨 나자 이들에 대한 구제가 강조되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면서 가정이 없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 주려는 요청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싹트기 시작했다. 친자녀가 없는 양친에게 그들의 후계자를 맺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양자제도는 친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친자 관계를 맺어주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김창희, 1985: 14-18).

1. 스웨덴

스웨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의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친척들에게 위탁 보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국외 입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는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입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외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국외 입양을 수행하기 시작했다(전익준, 1984: 7-8). 현재 스웨덴은 아동복지법에 어린이의 입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입양 방법

스웨덴에서의 국외 입양 업무는 임의 단체나 개인간의 입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 또는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은 '국제 입양을 위한 국

가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International Adoptions: NIA)’이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로 부터 허가받은 6개의 ‘입양센타(Adoption Centre: AC)’도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전익준, 1984: 8).

‘국제 입양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1973년에 설립되었는데, 외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지방정부 협의회, 입양센타, 스톡홀름 사회복지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국외 입양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입양 신청자에 대한 가정 조사 및 입양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익준, 1984: 8).

입양센타는 이미 입양을 한 양부모들과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1969년에 정부가 비영리 민간 단체로 허가하였다. 입양센타는 현재 1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사업비의 10퍼센트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입양센타는 외국의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알선 업무를 맡고 있다(전익준, 1984: 7-8).

(2) 입양 요건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양부모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에 대하여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으며 독신자나 미혼모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입양되어질 어린이에 대한 나이 제한은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입양될 어린이의 친부모와 법정 후견인의 입양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입양 동의는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양되는 어린이는 그가 태어난 나라의 법에 따라 필요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전익준, 1984: 8-9).

(3) 입양 절차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의 아동복지국에 입양 신청을 하게 된다. 아동복지 위원회에서는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의 주된 내용은 신청자가 어린이에 대하여 좋은 양육을 제공할 충분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양부모인지, 그리고 양부모가 어린이에게 사랑과 안정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아동복지 위원회에서 입양 신청자가 양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면, 지방 아동복지국에서는 입양에 대한 예비적 승인을 한다. 특히 아동복지 위원회에서는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면서 신청자에 대한 가정 조사도 실시하는데, 가정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양 신청자의 유아기, 청소년기 성장 과정, 교육, 직업,
부모와 형제 자매간의 관계
- ② 성격, 관심, 조직 활동, 친구 관계
- ③ 결혼 상태
- ④ 현재의 생활 조건(가정 환경, 직업, 수입, 건강, 주위로부
터의 평가, 입양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 등)
- ⑤ 건강 상태
- ⑥ 종교
- ⑦ 입양 아동에 대한 태도

가정 조사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또한 입양 신청자를 잘 아는 두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신청자가 지방 아동복지국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郡)법원의 고등 행정 법원에 제소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전익준, 1984: 9).

(4) 입양의 취소

법적으로 입양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부모가 입양한 어린 이를 양육하기가 곤란에 상황에 놓였을 때,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어린이의 후견인이 재입양에 동의할 경우에 어린이는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이 가능하며, 아동복지국은 어린이에게 재입양을 위한 새로운 가정을 찾아줄 의무가 있다(전익준, 1984: 10).

(5) 입양의 효력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스웨덴에 도착하자 마자 지방 아동복지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도착을 하고서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 아동으로 취급되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입양된 어린이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어린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산 상속인의 자격을 친자식과 동등하게 가지게 된다. 입양된 어린이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나, 입양되기 전에 쓰던 이름을 새로운 성과 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그 어린이의 후견인이 되며,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

(6) 입양의 완료

입양된 어린이가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게 되면 군법원의 판사는 입양이 완료되었음을 판결한다. 입양에 대한 완료 판결이 내려지면 입양아는 비로서 스웨덴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입양이 완료되면 정부는 양부모에게 부모에 대한 보상금(Parental Insurance)을 지급하고, 입양된 어린이에게는 가족수당, 유아 및 의무 교육 그리고, 의료 혜택의 기회를 준다(전익준, 1984: 11).

2. 美國

미국의 법체계는 대부분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입양법은 하나의 예외로서 오히려 로마법을 모방하고 있다(권정희, 1993: 93). 미국은 1851년 메사츄세츠주의 입양법을 최초의 입법 예로 하고 있는데, 그 후 1867년에는 일리노이주에서, 그리고 1868년에는 캔サ스주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입양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모든 주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의 입양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 관계는 연방 정부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 각 주의 입법 기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의 입양법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서로 비슷하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53년에는 통일 법전 위원회 및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통일입양법(Uniform Adoption Act)을 승인하기도 했으나, 이를 채용한 주는 오크라호마주와 몬타나주의 2개 주에 불과하다. 1980년에는 통일 입양법이 개정되어(Revised Uniform Adoption Act)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입양 방법

미국에 있어서는 입양 기관에 의한 입양(Agency Adoption)과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는 직접입양(Direct Adoption)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는 주정부 소속 기관과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민간 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주정부 소속의 입양 기관에서는 국내의 입양 대상 어린이들 중에서 장애, 질병, 고연령 등을 이유로 쉽게 입양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입양 가정을 찾아 주기 위하여 '주간 협의체(Interstate Compact)'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입양을 알선해 주고 있다(전익준, 1984: 13).

입양 기관은 비영리 단체인데, 석사학위를 가진 사회 사업가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사무실과 면접실을 확보토록 되어 있다. 입양 관련 업무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입양에 관계되는 비용 징수도 주정부의 관여없이 민간의 입양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2) 입양 요건

미국의 통일입양법에서는 입양을 하자 하는 양부모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부모의 자격에서 연령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독신자의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입양 대상 어린이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16세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입양될 수 있는 어린이는 친부모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친부모가 어린이를 유기하여 친부모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3) 입양 절차

외국의 어린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을 하게 된다.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 기관에서는 입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입양 신청자는 예비 교육을 마친 후 입양의 의사 결정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되고, 그래도 입양에 대한 의사가 확고할 경우에만 입양 기관에 정식으로 입양 신청서를 제출한다. 정식의 입양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양 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가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정 조사를 통하여 입양 기관은 양부모로서의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입양 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입양 신청자는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가정 조사의 결과에서 양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입양 기관은 외국의 어린이를 추천하여 양부모의 가정에 가결연한 상태의 위탁 보호를 의뢰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주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에 위탁 보호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험 동거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입양될 어린이와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이 서로 원만하게 적응할 때 법원은 입양의 성립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입양아는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전익준, 1984: 13).

(4) 입양의 취소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 주마다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어떤 주들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주는 사기나 강도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주에서도 어린이의 성격이나 습관 등과 같이 그 원인이 어린이에게 있는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입양의 효력

입양으로 입양아와 친부모와의 법률 관계는 완전히 없어지며, 입양된 어린이는 친생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 어린이의 성은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양부모는 아동의 친권자인 동시에 후견인 및 보호자가 된다(전익준, 1984: 14).

3. 英國

로마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옛부터 양자제도를 인정해 온 것과는 달리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러나 자녀가 없는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사실상의 양자 제도에 관한 관행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에서는 전후 양적으로 늘어난 고아나 비적출자의 보호를 위하여 1926년에 입양법(Adoption of Children Act, 1926)을 제정하게 되는데, 1926년의 법제정 이후 1939년에는 입양 알선 기관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1949년에는 전쟁고아와 혼외 자녀의 보호를 목적으로 입양법을 개정하였다. 1950년에는 여러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양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고, 1975년에 아동법(Children Act, 1975)을 제정하여 입양법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동법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공 재정의 지출과 행정력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탓에 아동법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동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에 대한 내용들의 시행 범위를 조금씩 넓혀오다가, 1988년 1월부터 완전한 시행을 보게 되었다. 1989년에는 아동법(Children Act)에 포함되고 있는 입양 관련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주된 내용은 공개 입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권정희, 1993: 77).

(1) 입양 요건

양자로 되는 자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한 자나 혼인의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양친은 모두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한 부부임을 원칙으로 한다. 입양 신청자가 비록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사불명 이거나, 병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의 별거 상태가 영속적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단독 입양 신청이 가능하다.

(2) 입양 절차

입양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입양의 결정에 관한 처리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 대상 어린이는 3개월 동안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보호된다. 보호 아동은 지방 당국 관리의 방문을 받게 된다. 1975년부터는 양자 협회에 의하여 위탁되었던 자를 보호 아동으로부터 제외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지방 당국에의 통지를 요구하지 않게 하는 대신 양자 협회가 어린이를 양친 희망자의 가정에 두고 충분히 관찰한 후 직접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등록성(Register-General)은 입양된 어린이에 대해 출생 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양부모는 입양아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입양아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출생 증명서에는 어린이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양에 따른 내용에 대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으며, 양부모는 입양아의 친부모에 대한 신원을 전혀 비밀로 할 수가 있다.

등록성은 아이의 원래의 출생 등록과 입양 등록과의 관계를 추적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 관련되는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게 된다. 입양아는 18세가 되면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래의 출생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입양 기관은 입양아로부터 출생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입양 사실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다.

(3) 입양의 효력

입양아는 상속권, 국적, 시민권, 그리고 혼인금지의 범위에 있어서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에 양부모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친자녀와 동일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1989년의 개정 아동법에 포함된 입양법의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사전 혹은 사후의 입양 계약에 공개

입양을 포함하여 법원과 입양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권정희, 1993: 87).

(4) 사후 관리

입양 알선 기관은 입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입양 가정을 계속 감독하고, 그리고 입양아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만일 입양을 위해 어린이를 입양 가정에 배치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의하여 입양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입양 알선 기관은 그 입양 배정을 재조사하게 된다.

4. 日本

일본의 구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는 가계의 유지와 제사 승계의 필요에서 인정된 순수한 가계 본위적 제도였다. 그러나 194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존중의 원리에 따르고자 가계의 유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김창희, 1985: 28). 다시 1987년에 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특별입양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특별입양에 대한 규정으로 종래의 보통입양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권정희, 1993: 171-174).

(1) 보통입양제도

보통입양제도에 의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보통입양에서는 가정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단지 양부모의 나이가 성년에 달했으면서 입양될 어린이보다 연장이면 된다. 보

통입양제도에 의한 입양아는 양친의 성을 따르고, 미성년자인 보통입양에 대하여서는 양친의 친권이 발생된다. 그러나 입양아와 친부모와의 관계는 친족 관계로 계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입양제도에 있어서의 파양에는 협의 파양과 재판 파양이 있는데, 재판에 의한 파양에는 심판 파양, 조정 파양, 그리고 소송 파양의 세 종류가 있다(권정희, 1993: 174-175).

보통입양제도에 의한 입양에는 그 목적이나 허가에 대한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높아진 상속세를 절감하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절세 입양 또는 상속세 입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면회 입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형무소에서 수형자를 면회하기 위하여 필요한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입양이다(권정희, 1993: 176).

(2) 특별입양제도

① 입양 요건

입양될 수 있는 어린이는 6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부모가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없어 그 아이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양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양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의 한 사람이 2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른 한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득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필요하다(권정희, 1993: 180-182).

② 입양의 절차

특별입양은 양부모가 입양된 어린이를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양부모에게는 입양된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입양아가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시험 양육 기간을 두고 있는데, 보통 입양을 신청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을 시험 양육 기간으로 하고 있다. 입양될 어린이가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입양 가정의 수양자로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 상담소가 기록하고 있는 감호 상황을 바탕으로 그 감호 기간을 시험 양육 기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시험 양육 기간이 끝난 후에 가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입양은 성립된다(권정희, 1993: 184-185).

③ 입양의 효과

특별입양이 성립되면, 입양된 어린이는 양부모의 혼인증의 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양부의 성을 따르게 된다. 반면에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특별입양의 판결이 내려지면 양부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호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권정희, 1993: 186).

④ 파양

특별입양제도에 의한 입양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양부모가 어린이를 재입양함으로써 처음의 양부모에게 파양이 된다. 그러나 입양아의 이익을 위하여 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파양이 인정된다. 가정재판소에 의하여 파양이 인정되면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친족 관계는 없어지고, 대신에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부활된다.

5. 여러나라의 入養制度 比較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양제도를 우리나라의 입양제도⁵⁾와 비교하여 <표-3.1>에 실었다. 입양제도에 대한 비교는 ①기준법규, ②양자의 자격, ③양친의 자격, ④입양 절차, ⑤입양의 취소, ⑥입양의 효력, ⑦입양 완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5)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에 관한 내용은 제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3.1〉 여러나라의 입양제도 비교

내용 / 국가별	한 국	스 웨덴	미 국	영 국	일 본
기준 법 규	입양특례법/민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이민 및 극적법 주법	아동법	신민법
양자의 자격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	연령의 제한은 없다.	16세 이하	18세 미만의 혼인 무 경험인 자	보: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인 자 아닌 자 특: 6세 미만의 자 (특별한 경우 8세 미만 인정)
양친의 자격	25세 이상 50세 미만 친자와 양자를 합쳐 5인 이내 의 자녀 결혼후 3년 경과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 입양시 3개월 이상 둑거 하여 적용 관찰 후 입양	25세 이상(특별한 경 우 18세 인정) 독신자 입양 허용	21세 이상 독신자 입양허용	21세 이상	보: 성년자로 양자보다 연장자인 자 특: 25세 이상, 양친 중 한쪽이 25세 이상 이면 다른 쪽은 20세 이상이면 된다. 독신자 입양은 허용 하지 않는다.
입양 절차	해외 입양은 상대국 입양 기관 을 통하여 법적 수속을 각각 반도록 한다. 입양 신청자는 입양기관 및 입양 상담 기관의 가정조사를 받는다. 입양의 승인은 행정당국에서 한다.(해외 이후 허가) 단,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법원 합의부의 결정으로 입양 인가 를 받은 후 해외 이후 허가를 다시 받는다.	좌동	좌동	좌동 입양 신청자는 사회 사 업가의 감독과 평가를 받는 시험양육기간을 거친다. 단, 16세이거 나 신청인이 천부모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정 조사 결과 양부모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군법원과 고등행 정법원에 제소하 여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보: 당시자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한 계약형 으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 특별입양을 입장하 기 위해서는 양친이 될 자가 가정재판소 에 신청하여야 하며 가정재판소의 판결 에 의한 선언주의를 따른다. 입양 신청 후 6개월 이상의 시 험 양육기간을 거친 다.
입양의 취소	입양의 취소는 입양후 1년내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 다.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 지 않고 있으나, 제 입양의 기회 부여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입양의 효력	신분상의 자녀로서 인정되어 양부모의 친생자의 등등한 권 리(상속권 포함)를 갖는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 및 상속 권을 갖는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 의 성을 따른다. 양부모의 아동의 후견 인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	좌동	좌동	보: 친가와의 친족관계 가 소멸하지 않으므 로 부양의 권리의부 상속권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 양친과 양자간에는 친자간계가 성립하 며, 부양의 권리의부 및 상속권이 생 기며 양자는 양친의 권리에 복종한다. 양자는 양친의 호적 에 입적하며 양친의 성을 따른다. 친생 부모와 그 친족사이 의 법률상 친족관계 가 완료된다.
입양 완료	국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비에 따라 신고함으로서 입양 완료된다. 국외 입양은 본적지 관찰 기정 법원에서의 국적 제적이 되어 야 한다.	법원의 입양 판결에 의하여 완료된다. 입정한 시험 등거 기 간 중 적용 상태가 좋 어야 한다. 입양을 하면 각종 부 담 금여금 및 교육 기타 혜택이 정부로 부터 부여된다.	좌동	좌동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비에 따라 신고하고 가 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서만 입양이 성립된다.

주: 일본 편에서 '보'는 보통입양제도를, '특'은 특별입양제도를 말한다.

第4章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

第1節 入養制度의 變遷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와 제사 상속 사상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조상으로부터 받은 가통을 자손에게 전하여 단절시키지 않는 것을 조상에 대한 최대의 책무라고 여겼다. 조상 숭배와 제사 상속의 사상은 혈연 집단인 씨족사회에서부터 발달하여 다자를 희망하는 관습을 낳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를 일찌기 발달시켰던 계기가 되었다 (허남순, 1973: 9).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가계의 영속이 기본적인 가치로 되고, 이를 위하여 상속제도와 양자제도가 대두되었다. 양자제도는 이 경우 가계의 영속을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양자제도도 역시 가계와 제사의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위가 양자제도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찌기 종법제의 영향을 받아 매우 공고한 기본위 양자제도를 구축하였다. 종법제에서는 가계의 계승을 고집하는데, 가계의 계승자가 반드시 남성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 계승자는 혈연 관계가 있는 남성들 중에서도 장유유서의 순서를 따라 적장자가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종법제는 가계의 영속과 존엄을 확신시키고 조상 숭배 사상을 고무시켜, 부존자비와 장유유서의 사상을 확립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철저한 종법적 제한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高麗時代 以前

양자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문헌은 거의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며, 그 이전의 양자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참고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에 양자제도가 있었는지 또는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중국의 종법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아직 미미하였던 탓에 종법적 기본위 양자제도가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제사와 가산의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위 양자제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김우덕, 1987: 7-8).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나 신라의 박혁거세, 탈해왕, 김알지 등이 모두 양자였던 사실이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복부여 사람으로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와서 졸본왕의 양자가 되었다가 왕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알 속에서 나온 어린이를 데려다 길렀다. 탈해왕은 제주도 출생으로 혁거세왕 39년에 하진 포의 해변 노파가 기아를 아들로 삼았다(허남순, 1973: 9-12에서 재인용).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상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입양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제도에 관한 문헌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업등이, 개구념 받이, 그리고 고아 수양 등의 관습에서 양자제도의 관행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허남순, 1973: 9-12; 김우덕, 1987: 7-8).

2. 高麗時代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혈통을 표시하던 원시 씨족명이 계급을 표시하는 성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엄격한 신분 차별이 생겨났다.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 대가족제였으며, 따라서 양자제도는 가계 계승을 위한 것이었다(허남순, 1973: 9). 그러나 주자가례가 전래된 고려말 이전까지는 아직도 중국의 종법제가 확고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제도 역시 종법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지는 않았다. 양자제도의 관행에 있어서 적장자 계승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차자 상속과 형제 상속이 인정되었고, 남계 혈족에 어긋나는 외손 봉사와 이성 양자 등이 행하여 지기도 했다(김우덕, 1987: 9).

특히 이성 양자는 수양자와 대양자로 구분되는데, 수양자는 3세 이하의 기아에게 계후부적이 인정되는 이성 양자이다. 자신의 자녀도 없고, 그리고 형제에게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 계후의 목적으로 이성 양자의 입양이 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수양자에게는 제사 상속의 의무가 주어졌으며, 상복 제에 있어서도 친생 자손과 동일하게 양부모의 유산을 계승하였다. 대양자는 3세가 지난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양부모가 노후를 위하여 입양하는 위친 양자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외손 계후, 이성 계후가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자와 대양자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3. 朝鮮時代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기본위 양자 제도였다. 주자가례가 전래되면서 유교 사상이 국가와 가족을 통제하는 기

본 원리가 되고, 또한 모든 법전의 제정이 명법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양자제도는 입양의 필요에서 생긴 중국의 종법제에 따라 정비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 인정되던 여손 봉사나 이성 계후가 조선시대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권정희, 1993: 8-11).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의 양자제도에서 요구되어지는 주요 요건은,

- ① 계후자는 동종지자로 할 것
- ② 적장자는 타의 입후로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자로 할 것
- ③ 지자는 제 2이하의 서자일 것
- ④ 적자와 서자가 모두 없으면 족인의 자로 입후할 것
- ⑤ 입양시는 양가 종의 승낙에 의하고 만약 입후의 가에 부가 없으면 관의 허가를 받을 것
- ⑥ 형제 또는 존속을 양자로 취하지 않을 것
- ⑦ 소후부모와 내외친에 대하여서는 친자와 똑같이 상에 복할 것
- ⑧ 소생부모와 사친은 모두 일등을 상복할 것
- ⑨ 손향렬 또는 형제로서 입후하지 않을 것
- ⑩ 반드시 족인으로 입후할 것이며 이성수양 또는 외손봉사는 행하지 않을 것

등이다(이봉, 1976: 98).

그러나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볼 때에는 종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기본 위 양자가 예외없이 통용되지는 않았으며, 위인적인 양자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드시 남자에 한정하지 않고, 양자의 숫자도 1인에 한하지 않았다. 동성 뿐 아니라 이성 양자도 이들에 대하여는 허

용되었고, 변칙적인 편법 내지 관습으로 차양자와 백골 양자가 성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이열 변칙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양자 제도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종계 계승의 표상인 제사 승계를 위한 기본위제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기 또는 부랑아동에 대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 양자제도를 활용하기도 했다. 숙종 때 '수양임시사목'이 제정되기도 했는데, 유기 또는 부랑 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또는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로 삼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허남순, 1973: 14-20).

4. 日帝時代

일제시대의 민사에 관한 기본 법령은 1912년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이다. 여기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조선의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양자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사 계승과 혈통 영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위 양자제도가 조선 고유의 관습으로 적용되었다(권정희, 1993: 17).

그러나 통치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본은 우리의 관습을 일본의 민법에 접근시키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에 따라 1938년에 조선민사령을 개정하면서 씨 제도, 이성 양자 및 서양자 제도를 새로이 채택하였다. 이는 우리의 친족 상속법을 일본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의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양자제도에서 종법적인 색채를 조금씩 없애면서 근대적인 법체계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권정희, 1993: 17).

조선 고유의 관습에서는 이성불량의 원칙이 유지되어 양자는 동성동본의 어린이들 중에서 정하여졌다. 관가 및 승려가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도 했으나, 1915년에 개정된 민법의 실시로 이성자를 양자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민사령을 3차로 개정하면서 생전 양자에 관해서는 이성불량의 원칙을 폐기하여 이성 입양을 인정하고, 사후 양자의 경우만 이성불량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이성 양자의 인정은 가부장적 종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던 사회의 관습에 대한 커다란 변혁이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후 1947년 11월 18일에 이르러서는 사법부장의 통념에 의하여 이성 양자의 입양이 다시 금지되고, 1949년 3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성 양자와 관련하여 문제된 서양자제도는 자연 소멸되고, 서양자 조차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성립초부터 무효이며 부부관계만 존속한다고 함으로써 양자는 다시 동성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939년에 개정된 민사령의 내용은 전부 백지화되고, 오히려 1922년의 구조 선민사령으로 복귀한 결과가 되었다(권정희, 1993: 18-19).

5. 現代的 意味의 入養制度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자제도와 많은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혈통과 가계를 잊기 위한 것, 호주와 동성동본인 양자 만이 호주 상속을 할 수 있는 점, 양자가 위주이고 양녀는 매우 희소한 점, 그리고 양자의 복지 본위가 아닌 양친 위주의 입양 등이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특성이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지는 가족제도의 변천은 현대적 의미의 입양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탁연택, 1972: 18).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한국전쟁 동안에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도입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양 정책의 방향은 몇 차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입양 정책의 방향 전환은 주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기의 구분은: ①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 중에 생겨난 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외 입양을 시작한 1954년부터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②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외 입양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부터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그리고 ③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내 입양이 단일 법규하에 있게 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로 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이후부터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전까지: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생겨 났다. 정부는 전쟁고아 및 전쟁 미망인 등에 대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1950년 후생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했다. 그리고 전후 급증하는 시설의 부실, 피폐 등을 방지하고 시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위해서 1952년에는 사회부장관의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 요령을 시달하였다. 이 훈령에서는 후생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을 시·읍·면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위탁 형식의 국내 입양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양부모가 친척의 관계에 있는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후생시설 운영 요령에서는 국외 입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외 입양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외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국외 입양은 주로 영문 번역 사무실을 통한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때의 국외 입양은 한국전쟁 중에 생겨난 혼혈아에 대한 대책으로 모색되었다(권정희, 1993: 18-19).

1954년에 한국 아동 양호회가 설립되고, 곧 이어 카톨릭 구제회(1955년), 안식교성육 양자회(1955년), 홀트 양자회(1956년), 국제사회 봉사회(1957년)등의 이국민간 원조 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국외 입양은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외 입양이 혼혈아에 대한 대책으로 모색되고 있던 때라(표-4.1 참조) 입양 기관들은 국내 입양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사회에서도 입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표-4.1> 입양대상 요인별 국외 입양의 실태(1955-61년)

(단위: 명, 퍼센트)

구분\년도	'55	'56	'57	'58	'59	'60	'61
혼 혈 아	52 (88) ¹⁾	618 (92)	411 (85)	623 (67)	291 (39)	245 (38)	361 (54)
비혼혈아	7 (12)	53 (8)	75 (15)	307 (33)	360 (61)	393 (62)	304 (46)
총 계	59 (100)	671 (100)	486 (100)	930 (100)	741 (100)	638 (100)	665 (100)

자료: 보사부(1962), 「보건사회통계연보」

주: 1) 월호안의 숫자는 국외 입양 총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입양이 친족 상속법에 의한 양자 제도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친족 상속법에서는 호주 또는 부모의 계통을 계승할 지위에 있는 자는 본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가에 입양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양자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의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 가능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양자될 내국인의 보호 조치, 그리고 입양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란과 결함이 야기되었다. 그러면서도 전쟁 중에 많이 생겨난 전쟁고아나 혼혈아 등을 외국인이 입양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955년 7월 23일 고아입양특례법안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에 의해 제안된 고아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 ① 양자될 자격을 가진 고아는: 첫째,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미성년자; 둘째,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로 구분한다(제2조 양자될 자격).
- ② 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려고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도록 한다(제4조 법원의 인가).
- ③ 고아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호를 할 수 있게 한다(제5조 제호).

등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1957년 6월 17일, 1958년 6월 26일, 1959년 1월 30일, 1959년 2월 23일, 1960년 12월 1일, 그리고 1961년 1월 31일에 걸쳐 6차례 상정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국회 회기가 계속되지 못함에 따라 상정된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국회사무처, 1992:

536-542).

(2)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입양특례법 제정 이전까지:

1960년대 초 - 1970년대 중반

1960년대에 접어 들면서 많은 아동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아동복지 관련법으로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1961. 8. 31, 법률 제703호), 고아입양특례법(1961. 9. 30, 법률 제731호), 아동 복리법(1961. 12. 30, 법률 제912호) 및 아동 복리 설치 기준령(1962. 10, 보 사부령 제92호) 등이 있는데, 이들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1년 9월 30일에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전쟁고아와 혼혈 아들을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친족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 또는 부모의 계통을 계승할 지위에 있는 자는 타가에 입양할 수 없으며, 민법 제 875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존속 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외에는 양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양자로 하려고 할 때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요건과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하여 불편과 결함이 많았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격증한 고아나 혼혈아 등을 외국인이 그 본국으로 입양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아입양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과 친족 관습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안을 제안하였다(국회사무처, 1992: 543).

고아입양특례법안에서는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보호와 국제 협조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 ② 고아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를 말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계승할 자를 포함한다(제2조 양자될 자격).
- ③ 양친될 자격은 외국인으로서 충분한 재산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어야 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친생자녀와 동일하게 처우하겠다는 철학과 이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제3조 양친될 자격).
- ④ 양친은 그 자격 실태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도록 한다(제3조 양친될 자격).
- ⑤ 외국인이 입양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물 판별 능력이 있는 고아에게는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법원의 허가).
- ⑥ 양친이 입양 자격 요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양친의 본국에 대하여 양자의 파양과 송환을 간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여 전쟁고아나 혼혈아가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양자될 자격과 양친될 자격, 그리고 양친의 보고 의무를 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다.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 ① 목적 규정 중에서 ‘고아의 보호와 국제 협조의 증진을 도모함’을 ‘고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으로,
- ② 양자의 자격 요건 중에서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 ③ 양자의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친생 자녀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를 ‘그 지역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로 처우해야 한다’로,
- ④ 양친의 자격 실태를 ‘정기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구가 있을 때에 보고’하도록, 그리고
- ⑤ 양친이 입양 자격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본국에 대하여 ‘양자의 파양과 송환을 알선 요구’하는 것을 ‘적절한 타가정에 의 입양 조치를 알선 요구’하는 것 등으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1966년에 개정되는데, 고아의 입양 알선에 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 입양이나 사적 입양에서 빚어지는 폐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입양 알선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때부터 국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① 입양 업무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행할 수 있게 한다(제5조 입양 알선 기관).
- ② 법무부 장관은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입적하여 당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토록 한다(제6조 입양아의 제적).
- ③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하여금 입양 알선 기관에 그 업무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제8조 감독).

- ④ 입양 알선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지
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토록 한다(제7조 비밀누설금지).
- ⑤ 고아의 입양 알선 업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한
다(제10조 부칙).

등이다(국회사무처, 1992: 546). 그러나 고아입양특례법은 1975년 12월 31 일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고 만다.

국외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하게 되는데, 그 1962년에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녀가 없는 가정을 조사하여 이들에게 입양을 권유하고, 일정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과 지역 주민 중에 덕망있는 사람을 골라 그들에게 고아 한 명을 수탁 보호 또는 입양 보호하도록 권장하였다(양길현, 1982: 274).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 이루어진 고아의 입양 보호 및 수탁 보호 권장은 양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입양된 어린이가 다시 시설에 수용되거나 아니면 부랑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입양 및 수탁되어진 어린이들이 가사 사용인이나 단순 노동자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고아들에게 국내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기회를 준다는 목적으로 '장기 위탁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대한 양연회를 전국 규모로 확장하여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을 연간 2천명씩 국내 위탁 가정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 충분히 뒷바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지 3년 3개월만에 중단되었다.

1970년대에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아동복지 분야에 상당히 기여해 온 외국 민간 단체의 원조가 점차 감소되었다(보건사회부, 1981: 214). 따라서 주로 외원에 의존하던 아동복지 소요 예산을 국내 재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국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72년에 ‘아동 복리 시설 정비 요강’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을 정비하였다. 아동 복리 시설 정비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부실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고, 동시에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아동 복리 시설들을 심신 장애 시설과 같은 특수 시설이나 탁아 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아동복지 시설을 줄임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의 필요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는 영·육아 시설의 새로운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목적에서 출발한 사회시설이 영·육아 시설로 그 목적을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 정비의 결과, 1970년대 중반 이후 영·육아 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은 현저히 줄어 들었다. 1970년에 영아 시설수는 74개로 7,636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430개의 육아 시설에 42,155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보건사회부, 1970: 304-307). 시설 정비의 결과, 영아 시설은 1975년에 37개로 감소되었으며, 시설의 보호 인원도 5,328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육아 시설은 313개로 감소하고, 육아 시설의 수용 인원도 29,323명으로 감소했다(보건사회부, 1981: 225).

아동복지 시설의 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수용된 어린이의 수도 줄어들게 된 것은 요보호 아동의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기아수가 1971년에는 5,525명이던 것이 1975년에는 7,34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요보호 아동의 수가 증가됨에도 아동복지 시설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사회시설 정비에 대한 방침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이다.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회 서비스가 시설 보호와 국외 입양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동복

지 시설을 정비하면서 시설의 수를 줄여 나가자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가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결국 아동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입양을 통해 외국의 자원에 더욱 의존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원영희, 1990: 31).

(3)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국외 입양 개방책 실시 이전까지: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초

한국전쟁 동안에 생겨났던 전쟁고아와 혼혈아는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면서 그 수는 많이 줄어 들었다. 반면에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바뀌어지고, 또한 성윤리도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미혼모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가정 불화나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어린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의 아동 복리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수용 능력은 줄어 들고, 반면에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게 되자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국외 입양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나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국외 입양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악선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입양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1976년 12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 부양책을 실시하게 된다.

입양특례법은(1976. 12. 31)은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 어린이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입양된 어린이는 반드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아입양특례법에 나타나고 있는 국외 입양의 절차나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는 불우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하여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 것이다.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①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는 아동 복리 시설 등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부모 등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 시설에 보호를 의뢰한 자 등으로 한다.
- ②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양자를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소양과 재산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는 얻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 ⑤ 국내 입양 절차는 양친이 될 자와 후견인이 취하도록 하고,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약취, 유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가 양자로 되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 ⑥ 외국인이 입양을 원한 때에는 입양 알선 기관이 그 입양 절차

를 취하도록 하고 국외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 ⑦ 입양 알선 기관은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⑧ 입양 알선 기관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 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 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기관 및 상담 기관을 설치하여 입양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군·구의 아동 복리 지도원 및 공·사립 아동 상담소, 입양 알선 기관 및 입양 위탁 기관을 입양 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 복지관과 상설 입양 상담소를 상담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입양 기관과 상담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 대상 가정의 빌굴 및 계몽, 상담, 그리고 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원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으로 아동 복리 지도원, 부녀 상담원, 전화 상담원 등을 입양 상담원 및 입양 추진 요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입양 기관의 설치 기준과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가족 계획원, 전화 상담원 등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을 입양 추진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에게 실적 위주의 입양 사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 입양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크게 저해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입양에 대한 나쁜 인식을 줄 소지가 많았다.

또한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열람하여 무자녀 가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행정 단위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유지들 중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양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양 대상 가정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선정된 입양 대상 가정의 명단은 행정 단위별로 작성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양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행정관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자녀 가정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비치함으로써 입양의 특수성과 비밀 보장의 원칙이 전혀 무시되고 있었다.

정부는 국외 입양에 관련된 입양 알선 기관별로 일정건 수의 국내 입양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그리고 국내 입양의 실적에 따라 국외 입양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쿼터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쿼터제를 통해 해마다 국내 입양을 10퍼센트씩 늘이는 반면에 국외 입양을 10퍼센트씩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쿼터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 입양 기관의 전문 인력 규모나 전년도 기아 발생수, 입양 관련 통계 등에 따라 국내 입양 및 국외 입양의 할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입양 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의 손상을 가져올 뿐이었고, 정부는 1982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을 1985년 이후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4) 국외 입양 개방책 실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1980년대 초 - 현재까지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국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면서 국외 입양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입양 정책의 방향이 '국내 입양 활성화'에서 '국외 입양 개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는데, 이 때까지는 보건사회부가 관할하던 해외 이주 허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외 입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정부는 국외 입양 개방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행정 지시를 통하여 국외 입양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미아가 기아로 처리되어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국내의 여론들이 문제시하자 정부는 기아와 미아가 시설에 수용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입양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개월로 규정된 입양 금지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1984년), 1986년에는 18개월 미만의 기아와 미아는 6개월, 그리고 18개월 이상의 기아와 미아는 12개월 동안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아가 국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입양 금지 기간을 자꾸만 늘린다는 것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는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어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아동복지의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한 입양을 원하는 국내의 가정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국내의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외 입양 개방책이 실시되자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는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고,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양 알선 기관들끼리 경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1988년 6월 입양 알선 기관이 입양 아동의 경쟁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하게 되고, 입양 알선 기관들은 ‘아동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섭외 금지’를 결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1986년의 아시안 게임 및 1988년의 올림픽 게임 등을 전후하여 각 입양 알선 기관에 국외 입양을 자제하도록 행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들의 여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조처일 뿐, 근본적으로 국외 입양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80년대에 들면서 실

시된 국외 입양 개방 정책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 개방책은 외국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말았다. 예컨대 뉴욕 타임즈에서는 한국을 ‘고아 수출 세계 제 1위국’으로 지적하면서 ‘미혼모 등으로 버려진 한국 아동들은 매년 6천명씩 입양이란 형식으로 미국에 수출되며, 미국에 입양되는 외국 아동 중 한국 아동이 약 60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관행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원영희, 1990: 49에서 재인용). 외국 언론의 영향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국외 입양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국외 입양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었다.

1988년의 국정 감사에서 국외 입양 개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수립하고, 그동안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외 입양에 의존하던 입양 정책의 방향을 국내 입양의 활성화로 전환하고자 하였다(1989년 9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은 결함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외 입양과 시설 입소의 방법을 지양하고, 대신에 국내에 있는 건전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한 국내 입양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입양 기관을 지정하고, 가정 위탁 보호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기관의 지정은 국내 입양을 확대한다는 동기는 좋았으나, 현재까지의 국내 입양이 부진했던 이유가 입양의 창구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이루어진 시책이었다. 그리고 국내 입양 기관들에게 국내 입양의 실적을 할당하고, 국내 입양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정부가 입양 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입양 기관의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거에 실시하다 실패를 경험했던 실적 위주의 입양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현재 '입양 사업 개선 지침'(1989)을 바탕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외 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원영희, 1990: 53),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 대상 어린이들이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第 2 節 入養 實態의 推移

1. 入養 實績의 推移

우리나라의 입양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를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된 입양제도에 의해서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992년 말 현재까지 모두 176,229명에 달하고 있다(표-4.2 참조). 이들 중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48,612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27,617명(전체 입양아의 72.4퍼센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외 입양의 비율이 국내 입양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혈통 중시의 사상때문에 국내의 가정들이 입양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되는 추이는 정부의 입양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 입양 실적의 추이(1958-1992년 말)

(단위: 명, 퍼센트)

연 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 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	7,895	3,267	4,628	41.4
1982	9,732	3,298	6,434	33.9
1983	10,259	3,004	7,255	29.3
1984	10,924	3,000	7,924	27.5
1985	11,692	2,855	8,837	24.4
1986	11,534	2,854	8,680	24.7
1987	10,329	2,382	7,947	23.1
1988	8,787	2,324	6,463	26.4
1989	6,063	1,872	4,191	30.9
1990	4,609	1,647	2,962	35.7
1991	3,438	1,241	2,197	36.1
1992	3,235	1,190	2,045	36.8
계	176,229	48,612	127,617	27.6

자료: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통계는 김근조(1989: 238)에서, 그리고 기타 연도의 통계는 보사부(1993b)에서 옮겨 옴.

196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행정력을 동원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기능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입양의 실적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전체 입양 중에서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36.6퍼센트가 된다.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의 비율이 1970년대에는 갑자기 줄어 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1972년에 '아동 복리 시설 정비 요강'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동 복지 시설을 많이 정비한 탓으로 여겨진다. 외연적인 경제 성장의 여파로 아동 복지 분야에 상당히 기여해 온 외국 민간 단체의 원조가 점차 감소되자 정부는 주로 외원에 의존하던 아동복지 소요 예산을 국내 재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부실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고, 동시에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아동 복리 시설들을 심신 장애 시설과 같은 특수 시설이나 탁아 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재원의 필요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요보호 아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비록 한국전쟁 동안에 생겨났던 전쟁고아와 혼혈아는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면서 그 수가 이미 많이 줄었으나, 경제 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미혼모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가정 불화나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어린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회 서비스가 시설 보호와 국외 입양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아동 복리 시설의 수는 감소되었으나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게 되자,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63,551명의 어린이가 입양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5,304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4.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48,247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75.9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1976년에 입양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피하면서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비율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1978년과 1979년에는 전체 입양 아의 46.9퍼센트가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난다(김근조, 1989: 238).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은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 위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입양 기관 및 상담 기관의 설치와 국외 입양에 관련된 입양 알선 기관별로 일정건 수의 국내 입양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그리고 국내 입양의 실적에 따라 국외 입양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쿼터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국내 입양 부양책의 결과로 1981년에도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퍼센트로 나타나 국외 입양의 금지에 대한 가능성은 엿보였다.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국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고 국외 입양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입양 정책의 방향은 ‘국내 입양 활성화’에서 ‘국외 입양 개방’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1981년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7,895명이었는데, 해마다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는 증가되어 1985년에는 11,692명의 어린이가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된 것은 모두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가 늘어난 탓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데,

1981년에 41.4퍼센트를 차지하던 국내 입양아 비율이 1982년에는 33.9퍼센트로, 1985년에는 24.4퍼센트로, 그리고 1987년에는 23.1퍼센트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자 입양 알선 기관들이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그러다가 1988년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 개방책이 외국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또한 1988년의 국정 감사에서 국외 입양 개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수립하고, 그동안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외 입양에 의존하던 입양 정책의 방향을 국내 입양의 활성화로 전환하고자 하였다(1989년 9월). 결함 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국외 입양과 시설 입소의 방법을 지양하고, 대신에 국내에 있는 건전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입양 사업 개선 지침'에 따라 국내 입양 기관을 지정하고, 가정 위탁 보호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전체 입양아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비율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1989년의 1년 동안에 1,872명의 어린이가 국내 가정으로 입양되어 전체 입양아의 30.9퍼센트를 차지하던 것이 1991년에는 36.1퍼센트로, 그리고 1992년에는 36.8퍼센트로 늘어났다.

2. 入養兒의 性別 分布

1958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전체 어린이들 중에서 남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4.7퍼센트로서 여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55.3퍼센트보다 10.6퍼센트 포인트가 낮다. 그러나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48,612명의 어린이들 중에서는 남자 어린이가 53.5퍼센트, 그리고 여자 어린이는 46.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의 입양 가정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국내 입양 가정이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바뀌어짐에 따라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여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4.3 참조).

<표-4.3> 입양아의 성별 분포

(단위: 명, 퍼센트)

연도	계	계		계	국내입양		계	국외입양	
		남	여		남	여		남	여
1958-1960	2,700	30.9	69.1	168	60	40.5	2,532	29.0	71.0
1961-1970	11,481	40.0	60.0	4,206	55.6	44.4	7,275	31.1	69.2
1971-1980	63,551	41.2	58.8	15,304	57.8	42.2	48,247	35.9	64.1
1981-1985	50,502	46.9	53.1	15,424	50.3	49.7	35,078	45.4	54.6
1986	11,534	48.1	59.1	2,854	52.9	47.1	8,680	46.6	53.4
1987	10,329	49.2	50.8	2,382	50.8	49.2	7,947	48.7	51.3
1988	8,787	50.4	49.6	2,324	53.0	47.0	6,463	49.5	50.5
1989	6,063	49.1	51.0	1,872	53.7	46.3	4,191	47.0	53.0
1990	4,609	49.9	50.1	1,647	51.0	49.1	2,962	49.3	50.7
1991	3,438	46.1	53.9	1,241	46.7	53.3	2,197	45.8	54.2
1992	3,235	49.1	50.9	1,190	47.9	52.1	2,045	49.8	50.2
계	176,229	44.7	55.3	48,612	53.5	46.5	127,617	41.4	58.6

자료: 보사부(1993b).

3. 入養兒의 發生 要因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입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으로, 이때의 입양은 주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도입되고 난 후 초기에 이루어진 입양의 대부분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290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0 퍼센트로, 미혼모의 자녀(10.7퍼센트)나 결손 가정의 자녀(24.3퍼센트)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 실적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2,467명의 어린이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8퍼센트,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5퍼센트, 그리고 결손 가정의 자녀는 1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표-4. 4>는 1958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입양 대상 아동이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체 입양아 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65.4퍼센트에 이른다.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동안에는 65.4퍼센트, 1986년에는 80.2퍼센트, 그리고 1992년에는 84.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입양 대상 어린이들 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까닭은 서구사회의 성해방에 대한 진보적인 조류가 우리사회에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 양식이 변화되면서 이성 교제의 기회가

늘어 나고, 또한 성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4.4〉 입양아의 발생 요인별 분포

(단위: 명, 퍼센트)

연 도	계	미 혼 모	기 아	결손 가정
1958-1960	2,700	290(10.7)	1,755(65.0)	655(24.3)
1961-1970	11,481	2,467(21.5)	6,975(60.8)	2,039(17.8)
1971-1980	63,551	26,702(42.0)	22,220(35.0)	14,629(23.0)
1981-1985	50,502	33,051(65.4)	8,748(17.3)	8,703(17.2)
1986	11,534	9,253(80.2)	866(7.5)	1,415(12.3)
1987	10,329	8,183(79.2)	698(6.8)	1,448(14.0)
1988	8,787	7,528(85.7)	450(5.1)	809(9.2)
1989	6,063	5,100(84.1)	399(6.6)	564(9.3)
1990	4,609	3,734(81.0)	323(7.0)	552(12.0)
1991	3,438	2,758(80.2)	301(8.8)	379(11.0)
1992	3,235	2,717(84.0)	243(7.5)	275(8.5)
계	176,229	101,783(57.8)	42,978(24.4)	31,468(17.9)

자료: 보사부(1993b).

第 3 節 現行의 入養制度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이 국내 및 국외 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1. 入養 方法

입양특례법에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은 입양 기관(상담 기관 포함)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 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입양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입양이나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입양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¹⁾.

기관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가 입양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입양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법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전문 기관을 통한 경우 입양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적절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入養 要件

(1) 입양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요건

민법에서는 호주의 직계 존속 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75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민법 제877조 제1항).

1) 입양 알선 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에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과 생활 보호 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2조 1항).

-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의뢰한 자
- ②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하여 보호 의뢰한 자
-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 의뢰한 자
- ④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자

위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나 국외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수가 있다. 이처럼 입양특례법에서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의하여 입양이 제한되고 있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존속 장남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양자로 입양될 수가 있다(전익준, 1984: 16-17).

(2) 양친될 자격 요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성년자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무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양친이 될 수 있다(김주수, 1981: 60-61)²¹⁾. 그러

2) 입양특례법 제16조(적용 기준)에 의하면,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나,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①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②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③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 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 ④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등이 양친될 자격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입양특례법 제3조). 그러나 양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양친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입양지침을 통해,

- ① 양부모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 ② 결혼 후 3년이 경과되고,
- ③ 친자와 양자를 합하여 5명이 초과하지 않고,
- ④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15세 이내 이어야 하고,
- ⑤ 국내에서 국외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가정에서 입양 대상 아동과의 동거 생활을 3개월 이상 관찰(월 1회이상 방문 상담) 한 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부, 그리고

있다.

⑥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부

등으로 양친될 자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김주수, 1981: 61)³⁾.

(3) 입양 절차

입양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4.1>과 <그림-4.2>는 국내 및 국외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데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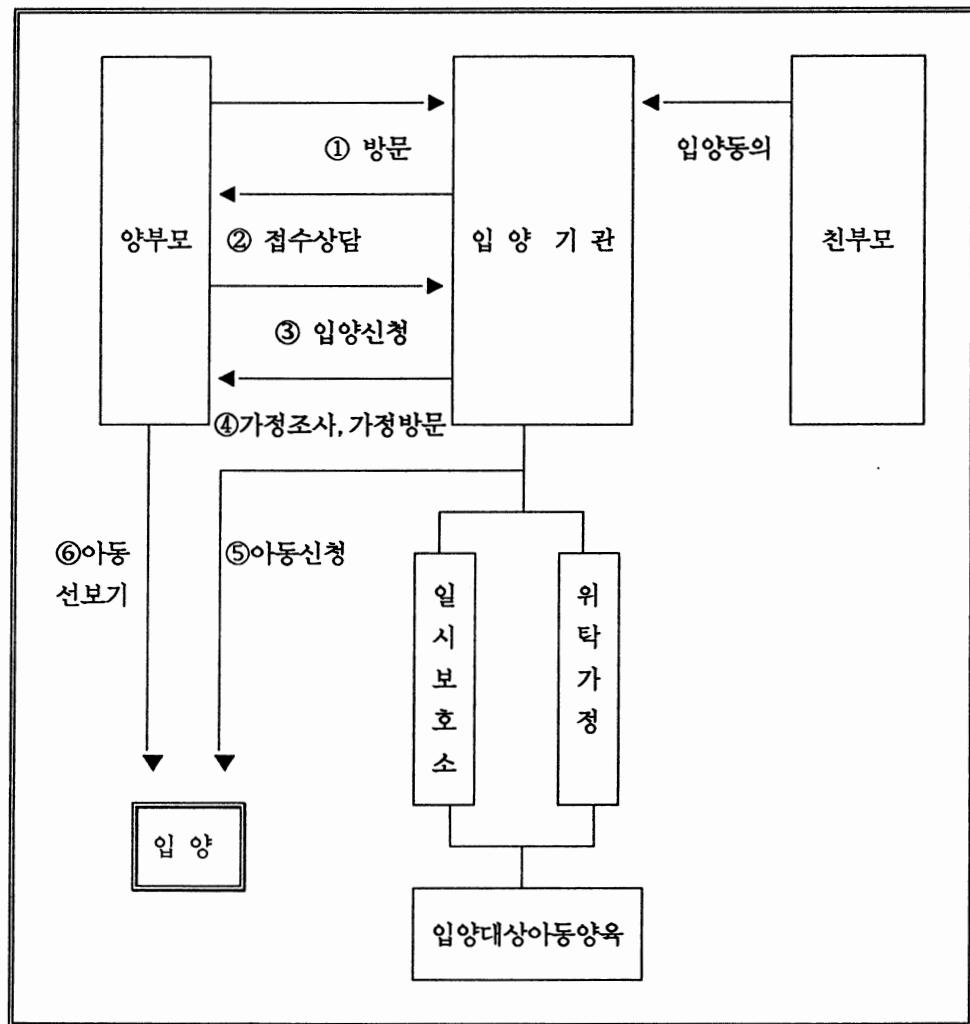
① 최초 면접(initial phase)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나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입양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된다. 최초 면접에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신이 입양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적격자로 인정되면 구체적인 입양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입양 상담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최초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입양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아울러 입양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3) 입양 신고를 할 때에 「양친될 자의 가정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입양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명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시행령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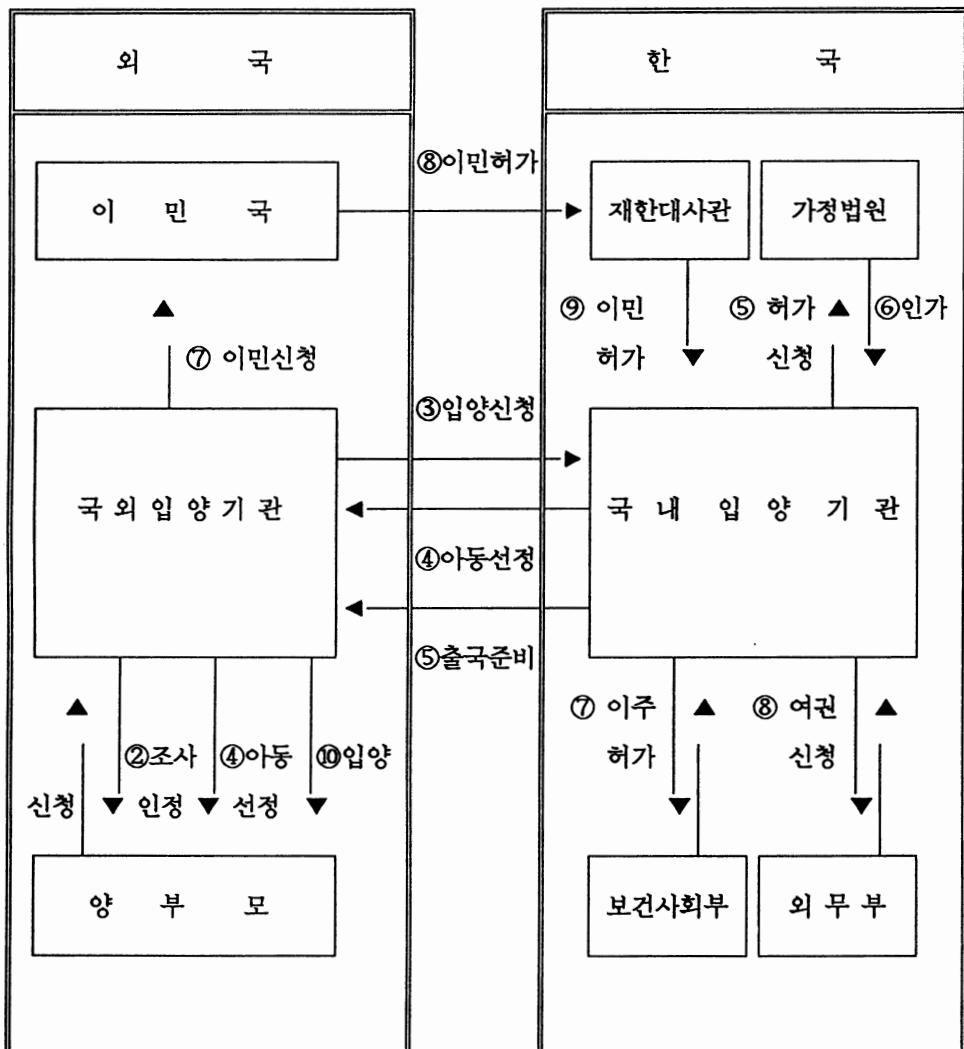
-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 입양 위탁 시설의 장
- ③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 알선 기관의 장
- ④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림-4.1〉 국내 입양의 절차*



주: 이지숙(1993: 24)에서 옮겨 실음.

<그림-4. 2> 국외 입양의 절차*



주: 이지숙(1993: 24)에서 옮겨 실음.

이때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하여 입양의 동기, 가족 상황, 불임의 원인, 재정 능력, 원하는 아동의 성별 및 특징, 그리고 종교 등에 대하여 상담한다. 최초 면접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양부모될 자격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입양 신청서를 받는다. 면접은 1회로 끝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3회 반복되기도 한다.

② 입양 신청 서류의 제출

최초 면접 후,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입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때 요구되어지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호적등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 부부건강진단서 1통(종합병원, 보건소, 입양 기관에서 지정한 병원 발행)

③ 가정 조사(home study)

양부모될 자가 입양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가정 조사를 위하여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가정 조사 때에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 면접을 통하여 최초 면접 때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양에 대한 부부의 명확한 태도, 가정의 안정도 및 성숙도 등을 파악한다. 가정 조사의 결과가 입양 승인의 적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사회복지사는 양부모될 자와 함께 충분히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입양을 권유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입양을 원

하는 가정이 올바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 조사는 주로 부부를 개별 면접하는 과정과 부부를 공동으로 면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면접을 할 때에는 대개 다음과의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 결혼전 가족 배경과 생활 태도

ⓑ 결혼 시기와 결혼 생활 관계 및 가정의 주도 행사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 부부의 건강 상태

ⓓ 아동 양육에 필요한 재정 능력

ⓔ 부부의 종교관

ⓕ 불임 사유, 불임 사실을 안 시기와 태도의 변화 및 입양 후 친자 출산을 가상하여 양자에 대한 태도

ⓖ 입양의 동기 및 태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여부

ⓗ 원하는 아동의 성별, 특징 및 장래 양육 계획

ⓘ 호적 등재 때 친자로 할 것인가, 양자로 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 대하여 함께 면접을 할 때에는 주로 부부 관계를 세밀히 관찰하고, 개별 면접에서 부부간에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면 이에 관한 확인과 조정을 시도한다. 또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④ 아동 선보기와 아동 선정

가정 조사가 끝나면 입양 기관은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에게 입양 대상 어린이의 신체적 정보, 그의 친부모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아동 양육 기간에

발견된 어린이의 발육 상태와 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최근에 찍은 어린이의 사진도 함께 보여 준다. 양부모될 자가 입양될 어린이를 직접 보고자 원하면 입양 기관은 입양될 어린이를 양부모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부모는 양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어린이 중에서 낯가림이 심한 경우는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얼굴을 익힌 후에 가정 배치 계획을 세우게 된다.

⑤ 가정 배치

입양이 결정되면 어린이는 새로운 양부모의 가정으로 배치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성격, 습관, 그리고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도를 해 준다. 또 아동의 예방 접종 등에 관한 건강기록 카드를 작성하여 양부모될 자에게 전해 주고, 입양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대처 방법 및 부부가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상담해 준다(김근조, 1988: 310-312).

⑥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입양아 및 양부모 그리고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도 함께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입양아가 입양 가정에 배치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면 사회복지사는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하고, 입양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입양아가 입적된 호적 등본을 제출받아 어린이가 입양 가정의 법적인 자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두 나라에 걸치는 입양이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국내 입양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대상 국가에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할 일과 우리나라의 입양

알선 전문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나누어져 진행된다. 외국에서 한국 어린 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그 나라 정부가 인정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거쳐 양부 모를 선정한다. 두 나라 사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이 기관에서 대행한다.

우리나라의 입양 기관과 입양 대상 국가의 입양 기관은 협정에 의해 국가를 대신하고, 서로 등등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입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외 입양은 국내 입양과 달리 인종, 문화, 언어의 이질적인 환경에서 어린이가 적응하고 성장해야 하므로, 입양아 및 양부모는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되어지는데, 법적인 사후 관리로 입양 후 국적 취득이 되면 외국 입양 기관은 이를 우리나라의 입양 기관에 통보하고, 우리나라의 입양 기관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국적 이탈 신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어린이가 국외의 가정에 입양된 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외국의 입양 기관은 입양 가정에 대한 아동의 적응 상태를 6개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린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의 입양 기관으로 보내고 있다.

(4) 입양의 취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입양 된 후 1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① 약취 또는 유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 표시를 한 때

특히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양친자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입양아와 양친자 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입양의 무효 및 취소 원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844조), 입양의 취소권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85조부터 제888조까지). 그러나 입양의 취소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효 및 취소의 원인에 대한 적용도 배제된다.

(5) 입양의 효력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입양 신고를 마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입양특례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국내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입양아에 대한 입양 신고도 출생신고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第 5 章 入養 構成 要素의 特性

第 1 節 調査 方法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 조사는 1993년 6월 7일부터 1993년 9월 6일까지의 3개월 동안에 전국의 입양 전문 기관 및 입양 알선 지정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모든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30개의 아동 복지 기관이 입양 전문 기관 또는 입양 알선 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데, 기관의 이름과 위치를 <표-5.1>에 정리했다. 전국의 30개 입양 기관들 중에서 1개 기관(천주교 백합 보육원)은 7세 이상의 일시 보호 시설로 변경되어 시설 개축 공사로 시설 운영이 휴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29개 입양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5.1> 입양 기관의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흘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국내·외 입양 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국내·외 입양 전문기관
동방아동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국내·외 입양 전문기관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국내·외 입양 전문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복2동 산 9-15	국내 입양 전문기관
성노원아기집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3-5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부산아동일시보호소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산 15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천주교 백합보육원	대구 중구 남산동 190-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대성원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혜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동 159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충현아동상담소	광주 서구 양립동 108-5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광주아동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6-8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영신원	광주 동구 용산동 산 76-6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형제사	광주 서구 봉선동 18-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피얼스영아원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인영아동상담소	경기 수원시 매산로3가 50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경동상담소	경기 수원시 하광교동 43-2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의정부아동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368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오순절보육원	강원 춘천시 약사동 73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자비영아원	강원 강릉시 흥제동 78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신촌동 308-48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기독영아원	전북 이리시 신흥동 406-7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전남영아일시보호소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임마뉴엘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영신보육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대내동 1-8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진해보육원	경남 진해시 태평동 16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방주원	경남 김해시 봉황동 143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홍익보육원	제주 제주시 도련1동 2043-1	국내입양알선 지정기관

주: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현황을 말한다.

입양 구성 요소(입양아, 친부모, 양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표는 모두 5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는데, ① 입양 아동에 관한 사항, ② 입양 아의 친부모에 관한 사항, ③ 입양아의 친모에 관한 구체적 사항, ④ 입양 아의 양부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⑤ 입양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부록의 조사표 참조). 연구진은 조사를 위하여 개발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를 위의 입양 기관에 배부하고, 입양 기관에 종사하는 아동 상담원에게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 작성 지침서’를 바탕으로 조사의 개요와 조사표의 작성 요령을 교육하였다. 조사표 작성 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 상담원은 조사 기간 중에 그가 근무하는 입양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입양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아동 상담원이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해당 입양에 관계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 이 완료된 조사표는 연구진이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조사표는 해당 어린이가 입양된 후 3일 이내에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입양 날짜에 대한 정의는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을 구분하여 정했다. 국내 입양의 경우는 양부모에게 입양아가 인계된 날을, 그리고 국외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목적으로 출국한 날짜를 입양일로 정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29개 입양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에서는 조사 기간 중에 한건의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3개 입양 기관으로부터 627부의 조사표가 회수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에 모두 627명의 어린이 또는 아기가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206명으로 전체 입양의 3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421명(67.1퍼센트)으로 나타났다(표-5.2 참조).

<표-5.2> 입양 기관별 입양아 수

(단위: 명, 퍼센트)

입양 기관	계	국내 입양	국외 입양
계	627 (100.0%)	206 (32.9%)	421 (67.1%)
기관 1 ¹⁾	115	31	84
기관 2	82	9	73
기관 3	257	40	217
기관 4	51	5	46
기관 5	55	55	0
기관 6	7	7	0
기관 7	11	11	0
기관 8	9	9	0
기관 9	4	4	0
기관 10	3	3	0
기관 11	2	2	0
기관 12	4	4	0
기관 13	3	3	0
기관 14	1	1	0
기관 15	5	5	0
기관 16	1	1	0
기관 17	2	2	0
기관 18	3	3	0
기관 19	2	2	0
기관 20	2	2	0
기관 21	1	1	0
기관 22	1	1	0
기관 23	4	4	0

주: 1) 조사에 참여한 입양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입양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연구진은 조사의 목적을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두었다.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또는 아기가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는지, 아니면 국외로 입양되었는지에 따라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입양 구성 요소에 대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간의 비교에는 교차표와 분산 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주로 T-test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회수된 627부의 조사표 중에서 15부는 여러 이유로 분석 자료에 이용될 수 없었다(표-5.3 참조). 나머지 612명의 입양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는 입양의 구성 요소별로 정리하였다.

〈표-5.3〉 조사 완료율

(단위: 건)

구 분	조사표 수	퍼센트
계	627	100.0
분석이 가능한 조사표	612	97.6
분석에서 제외된 조사표	15	2.4
조사 기간 이전에 입양된 경우	11	
입양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1	
잘못 기록된 경우	1	
이중으로 기록된 경우	2	

第 2 節 概念의 定義

입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입양 관련 용어에 대한 뚜렷한 정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입양: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는 ‘입양특례법(1976년 12월 31일 제정)’과 기타의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특히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알선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법 제10조) 입양이 입양 알선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만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입양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입양은 조사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나 어린이가 입양될 당시에 양부모의 국적이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인지에 따라서 구분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입양 대상 아동을 양자로 하는 경우는 국외 입양으로 간주한다.

입양일: 입양일은 입양아가 입양 가정에 배치된 날을 말한다.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에 배치되기 위하여 출국한 날을 입양일로 삼았다.

입양 대상 요인: 입양아가 보호 시설에 수용된 이유를 말한다. 입양특례

법에서는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복리 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입양아가 최초로 보호 시설에 수용된 이유를 바탕으로 입양 대상 요인을 ① 유기아, ② 미혼모의 자녀, 그리고 ③ 친부모의 의뢰로 구분하였다. 유기아는 입양특례법 제2조 제1항의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도지사가 보호 의뢰한 자, 그리고 ④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친부모의 의뢰에 의하여 보호 시설에 수용된 후 입양되는 경우는 입양특례법 제2조 제1항의 ② 부모가 입양을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 의뢰한 자를 말한다. 미혼모의 자녀는 미혼모가 출산한 혼외 출생자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친부모가 의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친부모가 미혼의 상태일 때에는 미혼모의 자녀에 포함시켰다.

第 3 節 調査의 結果

1. 入養兒에 關한 事項

(1) 입양된 국가

조사 기간 중에 입양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6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95명(31.9퍼센트)의 어린이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는데 반해서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417명에 달해 전체 입양아의 6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5.4).

<표-5.4> 국가별 입양아 수: 1993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3개월간)

(단위: 명, 퍼센트)

나라	계	기관 1	기관 2	기관 3	기관 4
계	612				
국내 입양	195				
국외 입양	417(100.0) ¹⁾	83	73	217	44
미국	340(81.5)	64	52	198	26
호주	19(4.6)	0	0	19	0
스웨덴	21(5.0)	0	21	0	0
덴마아크	21(5.0)	3	0	0	18
노르웨이	10(2.4)	10	0	0	0
룩셈부르	1(0.2)	1	0	0	0
프랑스	5(1.2)	5	0	0	0

주: 1) 콜호안의 숫자는 국외 입양아 중에서 각 국가별로 입양된 아동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2) 입양아의 인구적 특성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절차적, 그리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김근조, 1988: 27).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에는 양자가 될 자격과 양부모가 될 자격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 입양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의 성별 구성을 보면, 입양아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0퍼센트로서 여자가 차지하는 51.0퍼센트보다 2퍼센트 포인트 낮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하지만 국내 입양의 경우 남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남자 어린이가 더 많이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석(1987)은 1984년의 1년 동안에 한 입양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 입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입양아가 전체 입양아의 6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의 동기가 주로 ‘대를 잇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근조(1989)의 1988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입양 기관에 입양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양에 대한 태도와 의식 조사’의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의 46.0퍼센트가 ‘대를 잇기 위하여’ 입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를 잇기 위한 입양에서 남자 어린이가 선호되고 있음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김근조(1987a: 298)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내 입양에 있어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1년에 62.2퍼센트이던 것이 1986년에는 50.4퍼센트로 줄어 들고 있음을 보여 주고, 국내 입양에 있어서 남자 어린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입양 동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도 국내의 가정에서 입양하는 동기가 ‘대를 잇기 위해서’인 경우는 11.3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표-5.17 참조). 따라서 국내 입양의 경우도 점차 그 동기가 ‘대를 잇기 위한 것’에서 다른 동기로 옮겨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입양아에 대한 남아 선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입양되는 당시의 입양아의 평균 나이는 6.4개월인데,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국외 입양보다 더 어리게 나타나고 있다(각각 5.4 및 6.8 개월). 특히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된 어린이의 60.5퍼센트가 태어난 지 2개월 이전에 입양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되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근조(1987a)의 연구에서는 1986년에 한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어린이의 입양 당시의 나이를 분석하면서 1개월 미만의 아동이 8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국내 입양 아동의 경우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최경석(1987)은 신한덕(1976)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양부모가 1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37퍼센트라고 밝히고 있다.

입양아의 나이 구성은 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입양 대상 아동이 아직 어릴 때 입양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여러 연구나 조사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국외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아의 74.1퍼센트가 태어난 지 3개월 부터 6개월 사이에 입양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외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태어난 후 곧바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이 신생아나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사실을 숨기고 친생자인 것처럼 기르려 하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기르는 편이 정이 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최경석, 1987: 146). 입양이 입양아가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입양아가 대부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양되는 어린이의 대부분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인데(84.6퍼센트), 유기된 어린이는 6.4퍼센트, 그리고 친부모가 입양을 의뢰한 경우는 9.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가 태어나자 마자 입양되고 있기 때문에 입양되는 어린이는 대부분 입양되기 전에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전체 입양아 중에서 호적을 보유한 상태로 입양되는 경우는 12.9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83.8퍼센트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입양되어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의 친자녀로 호적에 등재된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입양아는 그의 탄생에 대한 배경과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입양아를 친자녀로 입적하고자 하

는 양부모의 의사가 우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양아의 탄생에 대해 알고자 하는 권리는 포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23.9퍼센트는 신체 및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 중에는 31.9퍼센트가 신체 및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신체 및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6.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체 및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및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국내 가정으로는 '전혀' 입양되지 않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바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5.5> 입양아의 인구적 특성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내 입양	국외 입양	$\chi^2, F^1)$
계	612 (100.0)	195 (100.0)	417 (100.0)	
성별				1.2
남자	300(49.0)	89(45.6)	211(50.6)	
여자	312(51.0)	106(54.4)	206(49.4)	
나이				364.5**
0-1 개월	64(10.5)	64(32.8)	0(0.0)	
1-2 개월	55(9.0)	54(27.7)	1(0.2)	
2-3 개월	12(2.0)	9(4.6)	3(0.7)	
3-4 개월	77(12.6)	10(5.1)	67(16.1)	
4-5 개월	155(25.3)	6(3.1)	149(35.7)	
5-6 개월	100(16.3)	7(3.6)	93(22.3)	
6-7 개월	38(6.2)	6(3.1)	32(7.7)	
7개월-1년	67(10.9)	19(9.7)	48(11.5)	

<표-5.5> 계속

특 성	계	국내 입양	국외 입양	χ^2, F
1-2 년	20(3.3)	9(4.6)	11(2.6)	
2-4 년	12(2.0)	6(3.1)	6(1.4)	
4+ 년	12(2.0)	5(2.6)	7(1.7)	
평균(개월)	6.4	5.4	6.8	1.9
출생장소				36.0**
병(의)원	507(82.8)	153(78.5)	354(84.9)	
조산소	23(3.8)	2(1.0)	21(5.0)	
자가	23(3.8)	5(2.6)	18(4.3)	
기타	41(6.7)	29(14.9)	12(2.9)	
무응답	18(2.9)	6(3.1)	12(2.9)	
입양 대상이 된 이유				64.9**
유기아	39(6.4)	35(17.9)	4(1.0)	
미혼모의 자녀	518(84.6)	142(72.8)	376(90.2)	
친부모의 의뢰	55(9.0)	18(9.2)	37(8.9)	
입양시 호적 보유 여부				34.7**
유적이아	79(12.9)	1(0.5)	78(18.7)	
무적이아	513(83.8)	178(91.3)	335(80.3)	
미상	20(3.1)	16(8.2)	4(1.0)	
파양 경험 여부				0.0
첫입양	590(96.4)	181(92.8)	409(98.1)	
파양 후 입양	6(1.0)	2(1.0)	4(1.0)	
무응답	16(2.6)	12(6.2)	4(1.0)	
신체 및 건강 상태				45.2**
이상 없음	466(76.1)	182(93.3)	284(68.1)	
이상 있음	146(23.9)	13(6.7)	133(31.9)	

주: 1) χ^2 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한 입양아의 특성이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값으로, ‘무응답’의 경우와 ‘미상’의 경우는 통계값의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F값은 입양아의 특성을 연속형 변수로 측정한 경우에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이 보이는 편차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값이다.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입양아의 인구학적 특성을 입양 대상 아동이 된 배경에 따라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을 <표-5.6>에 실었다. 입양 대상 아동이 된 요인을 유기아, 미혼모의 자녀, 그리고 친부모가 입양을 의뢰한 경우로 구분하였을 때, 이러한 구분에 따른 입양아의 인구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표-5.6> 입양 대상 요인에 따른 입양 아동의 인구적 특성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유기아	미혼모 자녀	친부모 의뢰	$\chi^2, F^1)$
계	612 (100.0)	39 (100.0)	518 (100.0)	55 (100.0)	
성별					4.5
남자	300(49.0)	22(56.4)	258(49.8)	20(36.4)	
여자	312(51.0)	17(43.6)	260(50.2)	35(63.6)	
나이					143.8**
0-2 개월	119(19.4)	1(2.6)	111(21.4)	7(12.7)	
2-6 개월	344(56.2)	4(10.3)	319(61.6)	21(38.2)	
6-12개월	99(16.2)	16(41.0)	68(13.1)	15(27.3)	
12+ 개월	50(8.2)	18(46.2)	20(3.9)	12(21.8)	
평균(개월)	6.4	23.1	4.7	10.2	59.8**
입양시 호적 보유 여부					4.2
유적아	79(12.9)	0(0.0)	74(14.3)	5(9.1)	
무적아	513(83.8)	19(48.7)	444(85.7)	50(90.9)	
미상	20(3.2)	20(51.3)	0(0.0)	0(0.0)	
파양 경험 여부					0.8
첫입양	590(96.4)	36(92.3)	503(97.1)	51(92.7)	
파양 경험	6(1.0)	0(0.0)	5(1.0)	1(1.8)	
무응답	16(2.6)	3(7.7)	10(1.9)	3(5.5)	
신체 및 건강 상태					3.1
이상 없음	466(76.1)	33(84.6)	395(76.3)	38(69.1)	
이상 있음	146(23.9)	6(15.4)	123(23.7)	17(30.9)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親母에 關한 事項

(1) 친모의 신원 확인 여부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입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에는 입양 대상 아동이 주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나 혼혈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입양 대상 아동은 주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요인에 따라서 친모의 신원이 파악되는 정도를 <표-5.7>에 정리하였다.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입양아의 친모의 신원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경우는 9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에 의하여 입양 대상 어린이가 된 경우에는 친모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5.7> 입양 대상 요인별 친모의 신원 확인 가능 여부

(단위: 명, 퍼센트)

계	유기아의 친 모		입양 의뢰 친 모	
	612 (100.0)	39 (100.0)	518 (100.0)	55 (100.0)
확인	548(89.5)	0(0.0)	501(96.7)	47(85.5)
부분 확인	21(3.4)	0(0.0)	15(2.9)	6(10.9)
확인 불가	43(7.0)	39(100.0)	2(0.4)	2(3.6)

(2) 친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입양아의 친모에 관한 정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569명에 대한 친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을 <표-5.8>에 정리하였다. 입양 대상 어린이의 친모의 평균 나이는 23.0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혼모 중의 39.8퍼센트는 20세 이전에 아기를 분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1984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미혼모의 실태가 보이고 있는 미혼모의 연령에서 19세 이하가 2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한국여성개발원, 1984: 39), 미혼모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모가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관계한 남성은 주로 애인이거나(32.8퍼센트) 친구 또는 직장 동료였다고 대답하고 있는데(31.4퍼센트),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도 11.8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친부모가 자녀의 입양을 의뢰한 경우는 친모가 결혼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입양 대상 어린이의 친모와 친부의 관계가 서로 배우자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에서는 친모와 친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는 60.4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친부와의 관계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3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가 아닌 친부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입양 대상 어린이는 미혼모의 자녀로 취급되어져야 하지만,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미혼모를 달리 정의한 까닭에 친부모가 입양을 의뢰한 경우로 부호화되기도 하였다.

입양아의 친모들 중에서 60.6퍼센트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5.6퍼센트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62.2퍼센트는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16.3퍼센트(84명)는 학생의 신분에 있으면서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

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혼 모들이 입양 알선 기관과의 상담에서도 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숨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8〉 친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단위 : 명, 퍼센트)

특 성	계	미혼모	입양 의뢰 친 모	$\chi^2, F^1)$
계	569 (100.0)	516 (100.0)	53 (100.0)	
나이				187.4**
-16 세	18(3.2)	18(3.5)	0(0.0)	
16-20세	208(36.6)	208(40.3)	0(0.0)	
20-25세	232(40.8)	226(43.8)	6(8.6)	
25-30세	49(8.6)	33(6.4)	16(30.2)	
30+ 세	60(10.5)	30(5.8)	30(56.6)	
미상	2(0.4)	1(0.2)	1(1.9)	
평균 ²⁾	23.0	22.0	32.3	4995.4**
친부와의 관계				308.5**
배우자	32(5.6)	0(0.0)	32(60.4)	
동거자	24(4.2)	23(4.5)	1(1.9)	
애인	171(30.1)	169(32.8)	2(3.8)	
동료	165(29.0)	162(31.4)	3(5.7)	
모르는 사람	66(11.6)	61(11.8)	5(9.4)	
기타	75(13.2)	69(13.4)	6(11.3)	
무응답	36(6.3)	32(6.2)	4(7.5)	
종교				2.7
무종교	345(60.6)	310(60.1)	35(66.0)	
불교	38(6.7)	32(6.2)	6(11.3)	

<표-5.8> 계속

특 성	계	미흔모	입양 의뢰 천 모	χ^2, F
개신교	78(13.7)	72(14.0)	6(11.3)	
천주교	25(4.4)	22(4.3)	3(5.7)	
기타	7(1.2)	7(1.4)	0(0.0)	
무응답	76(13.4)	73(14.1)	3(5.7)	
학력				49.7**
-국민학교	35(6.2)	22(4.3)	13(24.5)	
중학교	120(21.1)	102(19.8)	18(34.0)	
고등학교	373(65.6)	357(69.2)	16(30.2)	
대학(교)+	33(5.8)	30(5.8)	3(5.7)	
무응답	8(1.4)	5(1.0)	3(5.7)	
경제 상태				157.8**
경제 활동	335(58.9)	321(62.2)	14(26.4)	
실업	82(14.4)	76(14.7)	6(11.3)	
가사	60(10.5)	28(5.4)	32(60.4)	
학생	84(14.3)	84(16.3)	0(0.0)	
무응답	8(1.4)	7(1.4)	1(1.9)	
월 평균 소득				12.7*
소득 없음	237(41.7)	200(38.8)	37(69.8)	
-30만원	27(4.7)	25(4.8)	2(3.8)	
31~40	42(7.4)	42(8.1)	0(0.0)	
41~50	18(3.2)	17(3.3)	1(1.9)	
50+만원	9(1.6)	6(1.2)	3(5.7)	
무응답	236(41.5)	226(43.8)	10(18.9)	
평균(만원)³⁾	16.8	18.3	7.0	4757.6**

주: 1) <표-5.5>의 주 참조.

2)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는 2명을 제외한 567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값이다.

3) 월 소득을 밝히고 있는 333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값이다.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친모의 경제 활동 상태

임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335명의 친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표-5.9>에 실었는데, 공장 근로자가 32.8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 및 서비스업 종사자로 밝혀졌다(각각 30.7 및 27.8퍼센트).

<표-5.9> 경제 활동 중인 친모의 직업

(단위: 명, 퍼센트)

직업	계	미혼모	입양 의뢰 친모	χ^2 ¹⁾
계	335 (100.0)	321 (100.0)	14 (100.0)	15.1**
기술직	3(0.9)	3(0.9)	0(0.0)	
사무직	103(30.7)	101(31.5)	2(14.3)	
서비스업 종사	93(27.8)	84(26.2)	9(64.3)	
공장 근로자	110(32.8)	110(34.2)	0(0.0)	
무응답	26(7.8)	23(7.2)	3(21.4)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친모의 가정 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의 84.6퍼센트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혼모의 문제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되어 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가 발생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이명홍(1983: 7)은 미혼모가 되는 원인을 ‘단일한 특정된 설명으로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미혼모의 발생에 관련된 세가지의 사회학적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문화적 상대론으로 어떤 문화 집단에서는 결혼에 의한 출산 및 아동 양육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탈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문화 집단에서는 결혼에 의한 출산과 아동 양육에서 이탈되는 행위에 대해 완화된 가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둘째의 이론은 합법적 원칙론으로 합법성은 절대적이고 범문화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미혼모는 어떤 사회에서나 이탈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세번째 이론은 문화적 상대론에 바탕을 두면서도 미혼모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미혼모의 발생은 개인이 가지는 종교적 배경, 성지식의 취득 방법, 부모의 교육 방법,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 작용 관계 등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미혼모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는 김한규(1983), 한국여성개발원(1984), 그리고 허남순(1986) 등에서 찾아진다. 특히 허남순(1986)은 미혼모가 발생되는 배경을 개인의 성격적 요인, 개인의 가정적 요인,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개인의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등에서 찾고 있다. 개인의 성격에서는 낮은 자아 정체감이 미혼모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혼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박탈과 가정의 결손에 따른 정서적 불안 등을 들고 있다. 개인의 성에 대한 명료하지 못한 태도는 행동과 감정의 갈등을 가져와 미혼모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리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까닭에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고 있다.

입양 대상 아동의 84.6퍼센트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천

모에 대한 가정 환경이나 미혼모의 임신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친모의 가정 환경 및 임신력을 <표-5.10>에 정리하였다. 신원이 확인되는 569명의 친모들 중에서 72명(12.7퍼센트)은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모들 중에서 임신 당시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는 4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친모의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는 68.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퍼센트는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손된 가정 환경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이성 교제나 성을 적대감이나 불안의 돌파구로 이용하고 성관계를 통해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하며, 깊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허남순, 1986: 112-113). 임신할 당시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미혼모의 비율이 43.0퍼센트로 나타나 허남순(1986: 121)의 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미혼모의 41.1퍼센트보다는 약간 높으나, 비교 집단의 65.8퍼센트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결국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미혼모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미혼모 중에서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하기 이전에 또 다른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25.0퍼센트이고, 첫번째 임신의 결과를 분만하여 입양시키고 있는 경우는 75.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혼모의 84.1퍼센트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임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1.7퍼센트만이 피임 방법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신이 되고 난 후에도 ‘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 유산을 시키지 않고 분만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38.0퍼센트), 그 다음으로는 임신

의 사실은 알았으나 처리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 유산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0퍼센트).

<표-5.10> 천모의 가정 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미혼모	입양 의뢰 천 모	χ^2 ¹⁾
계	569 (100.0)	516 (100.0)	53 (100.0)	
주거 상황				272.0**
혼자 서	72(12.7)	69(13.4)	3(5.7)	
배우자	39(6.9)	7(1.4)	32(60.4)	
편부	20(3.5)	19(3.7)	1(1.9)	
편모	61(10.7)	60(11.6)	1(1.9)	
부모	224(39.4)	222(43.0)	2(3.8)	
형제자매	27(4.7)	27(5.2)	0(0.0)	
기타	101(17.8)	89(17.2)	12(22.6)	
무응답	25(4.4)	23(4.5)	2(3.8)	
부모와의 관계				21.6**
친부모	391(68.7)	368(71.3)	23(43.4)	
양부모	23(4.0)	22(4.3)	1(1.9)	
편부	24(4.2)	20(3.9)	4(7.5)	
편모	102(17.9)	86(16.7)	16(30.2)	
기타	17(3.0)	12(2.3)	5(9.4)	
무응답	12(2.1)	8(1.6)	4(7.5)	

<표-5.10> 계속

특 성	계	미흔모	입양 의뢰 천 모	χ^2
임신경험 회수				202.9**
0회	396(69.6)	387(75.0)	9(17.0)	
1회	46(8.1)	37(7.2)	9(17.0)	
2회	25(4.4)	10(1.9)	15(28.3)	
3회	17(3.0)	5(1.0)	12(22.6)	
4회	6(1.1)	1(0.2)	5(9.4)	
5회	1(0.2)	1(0.2)	0(0.0)	
6회	0(0.0)	0(0.0)	0(0.0)	
7회	1(0.2)	1(0.2)	0(0.0)	
8회	0(0.0)	0(0.0)	0(0.0)	
무응답	77(13.5)	74(14.3)	3(5.7)	
피임여부				3.7
예	13(2.3)	9(1.7)	4(7.5)	
아니오	483(84.9)	34(84.1)	49(92.5)	
무응답	73(12.8)	73(14.1)	0(0.0)	
인공유산을 시키지 않은 이유				39.1**
임신사실을 몰라서	216(38.0)	204(39.5)	12(22.6)	
처리방법을 몰라서	108(19.0)	105(20.3)	3(5.7)	
아이를 원해서	48(8.4)	33(6.4)	15(28.3)	
수술비용이 없어서	52(9.1)	44(8.5)	8(15.1)	
의사의 권유로	18(3.2)	16(3.1)	2(3.8)	
기타	118(20.7)	106(20.5)	12(22.6)	
무응답	9(1.6)	8(1.6)	1(1.9)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親父에 關한 事項

(1) 친부의 신원 확인 여부

입양의 구성 요소에 친부도 포함되고 있으나, 입양아의 친부에 관한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의 친부에 대한 신원이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파악되고 있는 경우는 74.0퍼센트이다. 그러나 친부의 신원이 완전히 알려지는 경우는 12.1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특히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 대상아가 된 경우에 친부의 신원이 파악되는 비율은 전체 입양아의 7.7퍼센트가 되고 있다.

<표-5.11> 입양 대상 요인별 친부의 신원 확인 여부

(단위: 명, 퍼센트)

계	유기아의 친 부	미 혼 모 자 친 의 부	입양 의뢰 친 부
계	612 (100.0)	39 (100.0)	518 (100.0)
확인	74(12.1)	0(0.0)	40(7.7)
부분 확인	379(61.9)	1(2.6)	367(70.8)
확인 불가	159(26.0)	38(97.4)	111(21.4)
			10(18.2)

(2) 친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신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지고 있는 452명의 친부들을 대상으로 그들

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을 <표-5.12>에 정리하였다. 미혼모 자녀의 친부의 평균 연령은 25.7세이고, 20세 미만의 친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입양아의 친부가 결혼을 한 경우는 10.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혼여성이 기혼의 남자와 관계하여 아기를 분만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친부의 59.3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7.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입양아의 친부 중에서 50.6퍼센트는 미혼모가 임신을 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14.7퍼센트는 학생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친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친부의 소득에 관한 사항도 잘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소득을 밝히고 있는 220명의 친부의 월 평균 소득은 13만 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12> 친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미 혼 모 의 친	입양 의뢰 친 부	χ^2, F ¹⁾
계	452(100.0)	407(100.0)	45(100.0)	
나이				85.2**
-16세	1(0.2)	1(0.2)	0(0.0)	
16-20세	62(13.7)	62(15.2)	0(0.0)	
20-25세	160(35.4)	159(39.1)	1(2.2)	
25-30세	73(16.2)	66(16.2)	7(15.6)	
30+세	90(19.9)	58(14.3)	32(71.1)	
무응답	66(14.6)	61(15.0)	5(11.1)	
평균 ²⁾	26.8	25.7	36.2	3925.9**

<표-5.12> 계속

특 성	계	미 자 친	혼 녀 모 의 부	입양 의뢰 부	χ^2 , F
결혼 상태					182.7**
결혼 유배우	73(16.2)	34(8.4)	39(86.7)		
결혼 무배우	9(2.0)	8(2.0)	1(2.2)		
미혼	331(73.2)	329(80.8)	2(4.4)		
무응답	39(8.6)	36(8.8)	3(6.7)		
종교					7.8
무종교	268(59.3)	236(58.0)	32(71.1)		
불교	16(3.5)	12(2.9)	4(8.9)		
개신교	19(4.2)	16(3.9)	3(6.7)		
천주교	8(1.8)	5(1.2)	3(6.7)		
기타	8(1.8)	8(2.0)	0(0.0)		
무응답	133(29.4)	130(31.9)	3(6.7)		
학력					56.2**
국졸이하	16(3.5)	6(1.5)	10(22.2)		
중졸	32(7.1)	25(6.1)	7(15.6)		
고졸	258(57.1)	240(59.0)	18(40.0)		
대졸이상	90(19.9)	84(20.6)	6(13.3)		
무응답	56(12.4)	52(12.7)	4(8.9)		
경제 상태					19.8**
활동	244(54.0)	206(50.6)	38(84.4)		
실업	78(17.3)	73(17.9)	5(11.1)		
학생	60(13.3)	60(14.7)	0(0.0)		
무응답	70(15.5)	68(16.7)	2(4.4)		
소득					52.4**
무소득	172(38.1)	166(40.8)	6(13.3)		
1-30만원	2(0.4)	2(0.5)	0(0.0)		
31-40만원	13(2.9)	13(3.2)	0(0.0)		
41-50만원	12(2.7)	7(1.7)	5(11.1)		
50+만원	21(4.6)	12(2.9)	9(20.0)		
무응답	232(51.3)	207(50.9)	25(55.6)		
평균(만원) ³⁾	13.7	10.2	48.5	26705.6**	

주: 1) <표-5.5>의 주 참조.

2)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386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값이다.

3) 소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220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값이다.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養父母에 關한 事項

입양을 통하여 양부모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혈통에 의하지 않은 입양아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입양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에게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가 되기도 하지만,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족적 영속에 대한 욕구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인구적 특성은 국내 입양 가정의 경우와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입양하는 동기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 양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양모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표-5.13>에 정리하였는데, 양모의 나이가 35-40세 사이에 있는 가정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4퍼센트).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에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외 입양의 경우에 양모의 나이가 좀 더 많다. 국내 입양의 경우는 양모의 나이가 35-40세인 경우가 37.9퍼센트이고, 30-35세인 경우는 33.8퍼센트인데 반해서 국외 입양의 경우는 양모의 나이가 35-40세인 경우가 4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35세 집단과 40세 이상의 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각각 24.9 및 23.3퍼센트).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간에 양모의 나이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입양할 당시까지의 결혼기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후 5-10년 사이에 입양하는 비율이 40.4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15년 사이에 입양하는 가정이 36.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입양과 국

외 입양을 구분하면, 국내 입양의 경우는 결혼 후 5-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입양을 하지만(45.1퍼센트) 국외 입양은 결혼 후 10-15년이 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입양하고 있다(40.5퍼센트).

양모의 종교에 있어서도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가정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으나, 이는 국가 간의 종교 분포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가정 모두에 있어서 양모의 종교가 개신교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각각 35.9 및 55.4퍼센트). 그리고 양모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국내 입양 가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수준이 가장 많아 전체 입양 가정의 57.4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양모의 경제 활동 여부에 있어서도 국내 입양 가정의 양모들 중에서는 33.8퍼센트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엔 77.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표-5.13> 양모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12 (100.0)	195 (100.0)	417 (100.0)	
나이				39.7**
- 30세	43(7.0)	29(14.9)	14(3.4)	
30- 35세	170(27.8)	66(33.8)	104(24.9)	
35- 40세	272(44.4)	74(37.9)	198(47.5)	
40+세	121(19.8)	24(12.3)	97(23.3)	
무 응답	6(1.0)	2(1.0)	4(1.0)	

<표-5.13> 계속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결혼 상태				3.7
초 혼	564(92.2)	190(97.4)	374(89.7)	
재 혼	32(5.2)	5(2.6)	27(6.5)	
무응답	16(2.6)	0(0.0)	16(3.8)	
결혼 기간				53.0**
- 5 년	58(9.5)	40(20.5)	18(4.3)	
5-10 년	247(40.4)	88(45.1)	159(38.1)	
10-15 년	222(36.3)	53(27.2)	169(40.5)	
15+년	82(13.4)	14(7.2)	68(16.3)	
무 응 답	3(0.5)	0(0.0)	3(0.7)	
종교				168.9**
무종교	61(10.0)	50(25.6)	11(2.6)	
불 교	38(6.2)	36(18.5)	2(0.5)	
개신교	311(49.2)	70(35.9)	231(55.4)	
천주교	187(30.6)	37(19.0)	150(36.0)	
기 타	20(3.3)	1(0.5)	19(4.6)	
무응답	5(0.8)	1(0.5)	4(1.0)	
교육 수준				213.4**
중졸이하	45(7.4)	44(22.6)	1(0.2)	
고 졸	203(33.2)	112(57.4)	91(21.8)	
대졸이상	360(58.8)	39(20.0)	321(77.0)	
무 응 답	4(0.7)	0(0.0)	4(1.0)	
경제활동				103.5**
활 동	390(63.7)	66(33.8)	324(77.7)	
비활동	197(32.2)	115(59.0)	82(19.7)	
무응답	25(4.1)	14(7.2)	11(2.6)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양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양부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양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입양 가정과 국외 입양 가정 간에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부의 나이가 35-40세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40.8퍼센트),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각각 35.4 및 43.4퍼센트). 하지만 국외 입양의 경우는 40세 이상의 양부가 있는 가정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32.1퍼센트인데 반해서, 국내 입양 가정 중에서는 양부의 나이가 30-35세인 가정이 32.3퍼센트를 차지한다. 양부의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독자이거나 장남인 경우가 전체 양부의 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차남 이하이거나 형제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자이거나 장남인 양부가 입양을 하는 비율이 국외 입양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외 입양 가정의 양부가 독자이거나 장남인 경우는 40.0퍼센트로 국내 입양 가정의 31.3퍼센트보다 8.7퍼센트 포인트가 더 높다.

양부의 종교 분포도 양모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부의 학력 수준은 국내 입양 가정의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이 56.9퍼센트로 가장 많으나, 국외 입양 가정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8.4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내 입양의 경우엔 양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36.4퍼센트), 국외 입양의 경우엔 양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입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6퍼센트). 그리고 입양 가정의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국내 입양 가정이 8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엔 200만원 이상의 가정이 92.8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표-5.14> 양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¹⁾
나이	612	195	417	10.1*
- 30세	17(2.8)	5(2.6)	12(2.9)	
30- 35세	149(24.3)	63(32.3)	86(20.6)	
35- 40세	250(40.8)	69(35.4)	181(43.4)	
40+세	190(31.0)	56(28.7)	134(32.1)	
무 응답	6(1.0)	2(1.0)	4(1.0)	
형제 관계				5.7
독 자	50(8.2)	12(6.2)	38(9.1)	
장 남	178(29.1)	49(25.1)	129(30.9)	
기 타	373(60.9)	134(68.7)	239(57.3)	
무응답	11(1.8)	0(0.0)	11(2.6)	
결혼 상태				1.9
초 혼	572(93.5)	191(97.9)	381(91.4)	
재 혼	23(3.8)	4(2.1)	19(4.6)	
무응답	17(2.8)	0(0.0)	17(4.1)	
종교				201.4**
무종교	85(13.9)	68(34.9)	17(4.1)	
불 교	37(6.0)	35(17.9)	2(0.5)	
개신교	292(47.7)	65(33.3)	227(54.4)	
천주교	173(28.3)	26(13.3)	147(35.3)	
기 타	20(3.3)	0(0.0)	20(4.8)	
무응답	5(0.8)	1(0.5)	4(1.0)	
학력				146.7**
중졸이하	24(3.9)	23(11.8)	1(0.2)	
고 졸	196(32.0)	111(56.9)	85(20.4)	
대졸이상	388(63.4)	61(31.3)	327(78.4)	
무 응답	4(0.7)	0(0.0)	4(1.0)	

〈표-5.14〉 계속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직업				144.9**
군인	7(1.1)	3(1.5)	4(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37(6.0)	4(2.1)	33(7.9)	
및 관리자				
전문가	152(24.8)	12(6.2)	140(33.6)	
기술공 및 준전문가	92(15.0)	6(3.1)	86(20.6)	
사무직원	133(21.7)	71(36.4)	62(14.9)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85(13.9)	46(23.6)	39(9.4)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8(2.9)	9(4.6)	9(2.2)	
기능공 및 관련기능	50(8.2)	25(12.8)	25(6.0)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17(2.8)	11(5.6)	6(5.6)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8(1.3)	5(2.6)	3(2.6)	
무응답	13(2.1)	3(1.5)	10(1.5)	
가구 소득(월)				300.7**
- 30만원	4(0.7)	2(1.0)	2(0.5)	
30- 49만원	0(0.0)	0(0.0)	0(0.0)	
50- 69만원	2(0.3)	2(1.0)	0(0.0)	
70- 99만원	18(2.9)	18(9.2)	0(0.0)	
100-199만원	132(21.6)	115(59.0)	17(4.1)	
200+만원	444(72.5)	57(29.2)	387(92.8)	
무 응 답	12(2.0)	1(0.5)	11(2.6)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5. 入養에 關한 一般 事項

(1) 입양의 제안 및 소요 기간

<표-5.15>는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국내 및 국외 입양에 관하여 누가 입양을 제안했는지와 입양을 신청한 후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5.15> 입양의 제안 및 소요 기간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12	195	417	
입양 제안				154.2**
양 부	122(19.9)	70(35.9)	52(12.5)	
양 모	82(13.4)	39(20.0)	43(10.3)	
양부모	342(55.9)	42(21.5)	300(71.9)	
기 타	54(8.8)	41(21.0)	13(3.1)	
무응답	12(2.0)	3(1.5)	9(2.2)	
입양 소요 기간				154.1**
+ 1 개월	20(3.8)	23(11.8)	0(0.0)	
1- 2 개월	32(5.2)	32(16.4)	0(0.0)	
2- 3 개월	26(4.2)	14(7.2)	12(2.9)	
3- 6 개월	140(22.9)	45(23.1)	95(22.8)	
6-12 개월	62(10.1)	19(9.7)	43(10.3)	
1- 2 년	171(27.9)	44(22.6)	127(30.5)	
2+년	139(22.7)	15(7.7)	124(29.7)	
무 응 답	19(3.1)	3(1.5)	16(3.8)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입양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국내 입양의 경우엔 양부(35.9퍼센트), 양부모 함께(21.5퍼센트), 그리고 양모(21.5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외 입양의 경우는 양부모 함께(71.9퍼센트), 양부(12.5퍼센트), 그리고 양모(10.3퍼센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입양을 신청한 후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58.5퍼센트는 입양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70.5퍼센트가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입양의 11.8퍼센트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입양이 이루어 졌으며, 2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는 7.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 입양은 입양 신청 후 1년 이상이 지나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가 6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9.7퍼센트는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입양의 동기

입양 가정에 대하여 입양 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5.16>와 <표-5.17>에 실었다.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기를 예로 제시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를 하도록 하였다. 입양 가정의 71.2퍼센트는 하나의 입양 동기만을 밝히고 있는데, 둘 이상의 입양 동기를 밝히고 있는 가정은 28.8퍼센트로 나타났다. 입양 동기를 밝히고 있는 605명의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 동기를 <표-5.16>에 정리하였다. 입양 가정의 가장 주된 동기는 불임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 가정과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각각 84.6 및 83.9퍼센트).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 입양 가정에서는 11.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0.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표-5.16> 양부모가 제시한 입양 동기의 수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계	612	195	417
0	8(1.3)	0(0.0)	8(1.9)
1	436(71.2)	140(71.8)	296(71.0)
2	126(20.6)	46(23.6)	80(19.2)
3	29(4.7)	5(2.6)	24(5.8)
4	12(2.0)	3(1.5)	9(2.2)
5	0(0.0)	0(0.0)	0(0.0)
6	1(0.2)	1(0.5)	0(0.0)

국내 입양에 있어서는 그 주된 동기가 가의 계승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김근조(1989)가 입양 상담을 위해 입양 기관을 방문한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6.0퍼센트가 입양에 대한 적합한 동기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직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아직까지 국내 입양의 주된 동기는 ‘대를 잇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김근조(1987a: 303-30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를 잇기 위하여’ 입양을 한 가정이 1982년에는 39.1퍼센트였으나 1986년에는 19.1퍼센트로 줄고 반면에 아동 중심의 입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국내 입양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가의 계승’에서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은 최경석(1987)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5.17> 각각의 입양 동기를 제시한 입양 가정의 수 및 비율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04	195	409	
불임	509(84.1) ²⁾	165(84.6)	344(83.9)	0.0
대를 잊기 위해	25(4.1)	22(11.3)	3(0.7)	34.5**
돕기 위해	71(11.7)	17(8.7)	54(13.2)	2.1
형제가 필요	44(7.3)	10(5.1)	34(8.3)	1.5
외로워서	94(15.5)	47(24.1)	47(11.5)	15.1**
기타	86(14.2)	4(2.1)	82(20.0)	33.5**

주: 1) 각각의 입양 동기에 대하여 해당되는 가정과 해당되지 않는 가정의 분포에 대한 국내 입양 가정과 국외 입양 가정의 차이를 말해 주는 통계값이다.

2) 조사표에서는 가능한 입양 동기를 모두 열거한 후 각각의 입양 동기에 대하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표에 나타난 분포는 각각의 입양 동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입양 가정 수를 말하며, 꿀호안의 숫자는 하나 이상의 입양 동기를 밟히고 있는 전체 입양 가정 중에서 각각의 입양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 입양 가정의 비율이다. 따라서 꿀호안의 퍼센트를 모두 합하면 100이 넘게 된다.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입양의 주된 동기가 입양 가정 양부모의 불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임을 입양의 동기로 삼은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5.18>에 정리하였다. 불임을 이유로 입양을 한 국내 입양 가정 중에서는 주로 부인에게서 불임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으나(65.5퍼센트), 국외 입양 가정에서는 양모 또는 양부모 모두에게

서 불임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각각 37.5 및 32.8퍼센트).

〈표-5.18〉 불임을 입양 동기로 제시한 입양 가정의 불임 이유

(단위: 명, 퍼센트)

특 성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509	165	344	49.6**
남편	54(10.6)	28(17.0)	26(7.6)	
부인	237(46.6)	108(65.5)	129(37.5)	
부부	128(25.1)	15(9.1)	113(32.8)	
원인불명	24(4.7)	6(3.6)	18(5.2)	
무응답	66(13.0)	8(4.8)	58(16.9)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입양의 주된 동기가 입양 가정 양부모의 불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양 가정에 양부모의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국내 입양 가정의 91.8퍼센트는 양부모의 친자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외 입양의 경우엔 77.2퍼센트가 친자녀가 없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 이전에 또 다른 어린이를 입양했는지를 살펴 보면, 국내 입양 가정의 95.9퍼센트는 전혀 입양한 사실이 없으나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46.8퍼센트가 이미 한명 이상의 입양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9〉 입양 가정의 친자녀 및 입양 자녀 수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12	195	417	
친자녀의 수				15.3**
0명	501(81.9)	179(91.8)	322(77.2)	
1명	60(9.8)	10(5.1)	50(12.0)	
2명	18(2.9)	4(2.1)	14(3.4)	
3+명	11(1.9)	0(0.0)	11(2.6)	
무응답	22(3.6)	2(1.0)	20(4.8)	
양자녀 수				120.0**
0명	389(63.6)	187(95.1)	202(48.4)	
1명	167(27.3)	6(3.1)	161(38.6)	
2명	28(4.6)	1(0.5)	27(6.5)	
3명	7(1.1)	0(0.0)	7(1.7)	
무응답	21(3.4)	1(0.5)	20(4.8)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입양 신청시 제시한 조건

양부모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게 된다. 혈통에 의하지 않은 입양아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양부모는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에 대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된 전체 어린이들에 대하여 33.8퍼센트는 입양아에 대하여 한가지 조건

만을 제시하였고, 57.7퍼센트는 두가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입양을 신청할 때 제시하고 있는 조건의 수에 있어서 국내 입양 가정과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12.5퍼센트가 입양아에 대한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42.2퍼센트가 한가지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양의 가정에서는 국외 입양 가정보다도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없고 전체 입양 가정의 84.1퍼센트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5.20 참조).

<표-5.20> 입양 신청시 제시한 조건의 수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계	612	195	417
0	52(8.5)	0(0.0)	52(12.5)
1	207(33.8)	31(15.9)	176(42.2)
2	186(30.4)	48(24.6)	138(33.1)
3	97(15.8)	50(25.6)	47(11.3)
4	24(3.9)	21(10.8)	3(0.7)
5	20(3.3)	20(10.3)	0(0.0)
6	8(1.3)	8(4.1)	0(0.0)
7	18(2.9)	17(8.7)	1(0.2)

〈표-5.21〉 각각의 조건을 제시한 입양 가정의 수 및 비율

(단위: 명, 퍼센트)

계	계	국 내	국 외	χ^2 ¹⁾
친부에 관하여	36(6.4) ²⁾	32(16.4)	4(1.1)	47.3**
친모에 관하여	43(3.7)	38(19.5)	5(1.4)	56.7**
입양아의 성별	339(60.3)	178(91.3)	161(43.9)	117.6**
입양아의 혈액형	103(18.3)	99(50.8)	4(1.1)	206.7**
입양아의 건강 상태	274(48.8)	144(73.8)	130(35.4)	73.7**
입양아의 외모	55(9.8)	51(26.2)	4(1.1)	87.8**
생년월일/나이	297(52.8)	83(42.6)	214(58.3)	12.0**
기타	93(16.5)	3(1.5)	90(24.5)	47.1**

- 주: 1)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제시한 가정과 제시하지 않은 가정의 분포에 대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차이를 말해 주는 통계값이다.
 2)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제시한 입양 가정 수를 말하며, 괄호안의 숫자는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전체 입양 가정 중에서 각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입양 가정의 비율이다.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에 대하여 한 가지 이상이라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560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5.21〉에 정리하였다. 입양아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입양 가정들 중에서 입양아의 나이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52.8퍼센트), 그 다음으로 입양아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48.8퍼센트).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에 제시하는 조건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 가정의 91.3퍼센트가 입양아의 성별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73.8퍼센트는 입양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국외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아의 나이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58.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입양아의 성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는 43.9퍼센트로 나타났다.

〈표-5.22〉는 입양 신청 당시에 입양아의 성별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의 성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입양 가정에서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성별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정 중에서 남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자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각각 41.6 및 53.9퍼센트), 여성은 입양하고자 하는 비율은 외국 입양 가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67.1퍼센트).

〈표-5.22〉 입양아의 성별 선호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339	178	161
4.4*			
남 자	124(36.6)	74(41.6)	50(31.1)
여 자	204(60.2)	96(53.9)	108(67.1)
무응답	11(3.2)	8(4.5)	3(1.9)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입양 사실의 공개 여부

입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내 입양의 경우엔 17.4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국외 입양의 경우는 97.1퍼센트가 공개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양아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내 입양 가정의 대부분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으나 (81.0퍼센트),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입양된 사실을 입양아에게 알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98.3퍼센트). 이러한 현상은 입양이 이루어진 후 입양아를 입양 가정의 구성원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하려는 경우가 한 건밖에 없었으며(0.5퍼센트) 나머지는 모두 입양아를 양자로 입적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97.9퍼센트). 반면에 국외 입양 가정에서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건 밖에 없고(0.2퍼센트), 거의 모두가 양자로 입적하고자 한다(98.9퍼센트).

〈표-5.23〉 입양 사실의 공개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12	195	417	
입양 과정의 공개 여부				458.4**
비밀입양	59(9.6)	58(29.7)	1(0.2)	
부분공개	104(17.0)	109(52.8)	1(0.2)	
공개입양	439(71.7)	34(17.4)	405(97.1)	
무 응답	10(1.6)	0(0.0)	10(2.4)	

〈표-5. 23〉 계속

	계	국 내	국 외	χ^2
입양 사실의 공개 예정 여부				443.3**
비공개	160(26.1)	158(81.0)	2(0.5)	
공개	445(72.7)	35(17.9)	410(98.3)	
무응답	7(1.1)	2(1.0)	5(1.2)	
호적 등재 형태				589.3**
천자로 입적	192(31.4)	191(97.9)	1(0.2)	
양자로 입적	411(67.2)	1(0.5)	410(98.9)	
무응답	9(1.5)	3(1.5)	6(1.4)	

주: 1) 〈표-5. 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5) 입양 소요 비용

국내 입양보다 국외 입양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경우엔 92.8퍼센트가 15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 입양의 88.2퍼센트는 입양에 소요된 비용이 1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9.2퍼센트는 입양에 소요된 비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몇몇의 입양 알선 기관이 입양에 소요된 비용을 밝히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표-5.24> 입양에 소요된 비용

(단위: 명, 퍼센트)

계	국 내	국 외	χ^2 ¹⁾
계	612	195	417
			526.3**
0- 49만원	22(3.6)	20(10.3)	2(0.5)
50- 79만원	67(10.9)	67(34.4)	0(0.0)
80- 99만원	58(9.5)	58(29.7)	0(0.0)
100-149만원	39(6.4)	36(18.5)	3(0.7)
150-199만원	217(35.5)	0(0.0)	217(52.0)
200+만원	153(25.0)	2(1.0)	151(36.2)
무응답	56(9.2)	12(6.2)	44(10.6)

주: 1) <표-5.5>의 주 참조.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第6章 要約 및 政策 提案

第1節 研究의 要約

1. 兒童福祉 서비스로서의 入養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라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며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들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사회사업 연감, 1960, 장인협·오정수, 1993: 13-14에서 재인용),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의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전문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이 현대 사회에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주로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국가의 사회 정책 수립에서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천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편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선택주의적 입장의 개념에서는 아동복지를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하여 요보호 아동을 아동복지의 우선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카두신, 1974; 장인협·오정수, 1993: 13에서 재인용).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는 요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요보호 아동에는: ① 보호자가 없거나 모자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②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 ③ 가족들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그리고 ④ 어린이에 대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특별 보호를 요하는 아동 등이 포함된다.

(3)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장소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가정외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이 어린이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일차적인 중심임을 강조하여, 어린이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가 충족될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방어선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본 가정에서의 1차 방어, 대리 가정에서의 2차 방어, 그리고 수용시설에서의 3차 방어로 분류하기도 한다(주커만, 1983: 26-31).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① 가정 위탁 보호, ② 시설 보호, 그리고 ③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 위탁 보호는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한시적으로 계획된 대리 가정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되어지는 가정의 종류에 따라서, 가정 위탁 보호, 소집단 보호, 그리고 집단 보호 등으로 나누어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위탁 보호만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두 가지 형태의 가정 위탁 보호가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시설 아동을 태어난 가정에 복귀시키고 구호를 제공하여 주는 거택 구호 사업이

고, 또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시설 아동을 적당한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위탁 사업이다. 그리고 위탁 사업의 경우는 어린이가 고용되어 위탁되는 고용 위탁, 무료로 위탁 보호되는 무료 위탁, 그리고 시설이나 국가가 위탁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 위탁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속에서 정서적 인격형성으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인천 직할시와 광주 직할시에서 198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가정 위탁 보호는 대개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되어지기 전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설 보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 위탁 보호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위탁 보호 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 제도, 경제적 불안정, 주거 공간의 부족, 아동 수당 등 사회보장의 미비, 그리고 위탁 보호에 관한 전문 사회사업 기관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가 가정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또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오히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 조치로서 시설 보호를 하게 된다. 시설 보호, 특수시설 보호, 그리고 집단 보호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한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 제도에서는: ① 성격 형성을 위한 오락이나 집단 경험의 결여, ② 아동 분류의 부적절, ③ 교육적 대책, 특히 직업 훈련의 불비, ④ 시설 인가, 감독, 실제 지도면의 부족, ⑤ 인사, 재정, 감독 절차 등의 행정적 미숙, ⑥ 세심한 조사를 통한 입양이나 위탁 서비스의 불비, ⑦ 훈련된 직원의 부족, 그리고 ⑧ 불충분한 지역 사회 지원 활용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장인협·오정수, 1993: 349). 시설 보

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어린이는 가정 환경안에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1993: 3), 국내 입양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며,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 다른 가정에서 조차도 양육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적인 환경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선 집단 보호 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4) 사회 서비스로서의 입양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의 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는 아동복지권(모든 어린이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 가정 생활을 누릴 권리,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카두신·쥬디스, 1988), 이를 위해 입양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 정책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서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내의 보호 시설이나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가정에 이들을 입양시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양은 국외 입양으로부터 시작되었는

데, 전쟁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은 거의 없어지고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어린이가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에도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입양제도 아래서 1992년말 현재까지 입양된 어린이의 수는 모두 176,229명인데, 그 중에서 127,617명(72.4퍼센트)이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는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보사부, 199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 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입양 대상 아동을 국내의 가정에서 입양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입양의 대부분을 외국의 가정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불명예는 우리나라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를 지키지 못(해)…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빙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조선일보, 1990. 11. 27일자). 이에 정부는 1990년 초에 1996년부터 해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복지 정책을 보는 입장에 따라 전통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원영희, 1990: 5-11). 전통적 접근에서는 입양 정책을 자유 및 평등으로 추구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사회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입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에게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①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 ② 궁정적인 정체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 관계, ③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생산 활동에의 참가, ④ 안전, 그리고 ⑤ 자기 실현 등을 포함하고(길, 1985: 25), 이러한 요구는 가정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입양 정책은 어떤 이유로 어린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을 때, 이들에게 그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 주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된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입양 정책을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나 국가의 노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혼모의 문제,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자녀 가정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되는 사회 정책 중의 하나가 입양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남기민 등, 1984: 267).

입양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실천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된다. 이는 마르크시즘에 바탕을 두는 주장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고, 또한 자본에 대한 반대세력의 투쟁에 대해 자본의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양보를 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피치오프·할러웨이, 1985; 원영희, 1990: 9에서 재인용) 입양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주로 국가간의 입양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국가간 입양을 어린이의 국제적 교역으로 취급하는 저개발 이론이 대표적이다. 국가간 입양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저개발 국가에서 서구 자본주의국가로 나타나고, 이때 어린이는 상품화되어 수출품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얻게 된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도 결국은 입양 정책을 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2.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

(1) 입양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다. 이미 삼국 시대에도 양자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가부장적 대가족제가 확립된 고려 시대에는 혈연 관계가 있는 동성 양자제도가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 들어 오면서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기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 숭배와 제사 상속의 사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적 의미의 입양 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 후 오늘날까지 입양제도는 여러 변화를 보여 왔는데, 처음 시기는 한국전쟁 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으로 국외 입양이 시작된 1954년부터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 두번째 시기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외 입양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부터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세번째 시기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내 입양이 단일 법규하에 있게 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한국전쟁 이후부터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전까지: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생겨 났다. 정부는 전쟁고아 및 전쟁 미망인 등을 위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후생 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1950년), 전쟁 후 급증하는 시설의 부실, 피폐 등을 방

지하고 시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위해서 1952년 사회부 장관의 훈령으로 ‘후생 시설 운영 요령’을 시달하였다. 전쟁 직후 혼란했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입양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는데 ‘후생 시설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위탁 형식의 국내 입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친척 입양이 국내 입양의 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실정이었다.

이 시기에 국외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일환으로 국외 입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국외 입양은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된 혼혈 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색되었다. 법적 근거나 제재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국외 입양이 주로 영문 번역 사무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에 한국 아동 양호회가 설립된 이후 이국민간 원조 기관으로서 카톨릭구제회(1955년), 안식교 성육 양자회(1955년), 홀트 양자회(1956년), 국제사회 봉사회(1957년)등이 세워져 기관 입양을 통한 국외 입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1957년부터 1961년까지 6차례나 상정하였으나, 국회 회기가 계속되지 못하여 상정될 때마다 폐기되다가 마침내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②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입양특례법 제정 이전까지:

1960년대 초 - 1970년대 중반

1961년에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고아입양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의 아동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위한 법적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아입양특례법은 1966년에 개정되면서 고아의 입양 알선에 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인 입양이나 사적 입양에서 빚어지는 폐단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또한 입양 알선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으로써 국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 시기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고급 공무원과 덕망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아에 대한 위탁 보호나 입양을 권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 이루어진 고아의 국내 입양 및 위탁 보호는 양부모의 인식 부족때문에 입양 아동이 시설로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부랑아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및 위탁 보호되는 어린이들이 가사 사용인이나 단순 노동자로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당시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서 '장기 위탁 사업'이 채택되기도 했는데, 정부는 대한 양연회를 전국 규모로 확장하여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을 연간 2천명씩 국내 위탁 가정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도 및 감독이 어려운 점,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으로 정부는 아동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내에서 충당하고자 '아동복리 시설 정비 요강'을 발표하게 되는데(1972년), 이에 따라 한국전쟁 직후에 급격히 늘어나게 된 부실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오히려 요보호 아동의 발생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국외 입양이

계속되자 북한은 한국의 국외 입양에 대한 악선전을 시작하게 되고, 정부는 입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③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해외 입양 개방책 실시 이전까지: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초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고아의 수는 국외 입양을 통하여 많이 줄어 들었으나,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의 여파로 가족 해체나 성윤리 해이 등의 사회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이의 영향으로 미혼모 및 가정 불화나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어린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났다. 정부는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아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 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1976년), 이를 바탕으로 요보호 아동의 국내 및 국외 입양을 촉진하면서 입양아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구체적 내용으로는 실적 위주의 입양 전개와 국외 입양에 대한 쿠터제 적용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 요원과 전화 상담원 등의 비전문가를 입양 추진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에게 실적 위주의 입양 사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그리고 입양 대상 가정의 선정을 위해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열람하여 무자녀 가정을 조사하도록 하고, 선정된 입양 대상 가정의 명단을 지역별로 작성하여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입양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비밀보장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정부는 국외 입양을 하는 입양 알선 기관별로 일정 건수의 국내 입양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국내 입양의 실적에 따라 국외 입양을 할당해 주는 방법으로 쿼터제(Quater System)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마다 국외 입양을 10퍼센트씩 줄이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쿼터제 실시를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적에 있어서는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의 손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해마다 발생되는 입양 대상 아동의 수, 각 입양 알선 기관의 전문 인력 규모, 그리고 기타의 국내 입양에 관련된 사회적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쿼터제의 적용은 일률적이었다.

따라서 실적에 바탕을 두는 쿼터제를 통한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이에 정부는 1982년부터 국외 입양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1985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④ 국외 입양 개방책 실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1980년대 초 - 1992년 말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국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면서 국외 입양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라는 차원에서 국외 입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는데, 이러한 입양 정책의 방향 전환은 결국 외국에서의 입양 요청에 따른 현실적인 조처의 결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국외 입양 개방책은 보사부가 관할하는 해외 이주 허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외 입양에 대한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국외 입양에 대한 개방 정책이 실시되자 입양 알선 기관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입양 알선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경쟁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하고(1986년), 입양 알선 기관들은 ‘아동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섭외 금지’를 결의하는 사

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세계 각국의 관심이 우리나라에 쏠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이 언론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주된 내용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한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나라가 아직도 국외 입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수가 세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외국 언론의 영향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국외 입양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8년의 국정감사 이후에 국외 입양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더욱 거세어지자, 정부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세워 그동안 국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 정책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1989년 6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은 결함 가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외 입양과 시설 보호의 방법을 지양하고, 대신에 국내의 건전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첫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은 국내 입양 기관의 지정과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세부 지침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2)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

입양 구성 요소(입양아, 친부모 및 양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조사의 방법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 조사는 1993년 6월 7일부

터 1993년 9월 6일까지의 3개월 동안에 전국에 있는 29개의 입양 전문 기관 및 입양 알선 지정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모든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모두 5개 부문(입양 아동에 관한 사항, 입양아의 친부모에 관한 사 항, 입양아의 친모에 관한 구체적 사항, 입양아의 양부모에 관한 사항, 그 리고 입양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구성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를 연구진이 개발하여 입양 기관에 배부하고, 입양 기관에 종사하는 아동상담원에게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 작성 지침서'를 바 탕으로 조사의 개요와 조사표의 작성 요령을 교육하였다. 조사표 작성 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상담원이 조사 기간 중에 그가 근무하는 입양 기 관을 통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입양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친 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해당 입양에 관계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된 조사 표는 연구진이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29개 입양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에서는 조사 기간 중에 한건의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3개 입양 기관으로부터 627부의 조사표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206명으로 전체 입양의 3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421명(67.1퍼센트)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627부의 조사표 중에서 15부는 여러 이유로 분석 자료에 이용될 수 없었고, 나머지 612명의 입양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을 국내 입양과 국외 입 양의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또는 아기가 국내의 가정 으로 입양되었는지, 아니면 국외로 입양되었는지에 따라서 입양 구성 요소 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입양 구성 요소에 대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간의 비교에는 교차표와 분산 분석의 기법

을 이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주로 T-test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② 입양에 관한 일반 사항

입양된 국가: 조사 기간 중에 입양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6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95명(31.9퍼센트)의 어린이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반해서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417명에 달해 전체 입양아의 6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의 81.5퍼센트는(340명)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의 제안 및 소요 기간: 입양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국내 입양의 경우엔 양부(35.9퍼센트), 양부모 함께(21.5퍼센트), 그리고 양모(21.5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외 입양의 경우는 양부모 함께(71.9퍼센트), 양부(12.5퍼센트), 그리고 양모(10.3퍼센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입양을 신청한 후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58.5퍼센트는 입양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70.5퍼센트가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입양의 11.8퍼센트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2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는 7.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 입양은 입양 신청 후 1년 이상이 지나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가 6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9.7퍼센트는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의 동기: 입양 동기를 밝히고 있는 605가정이 밝히고 있는 주된 입양 동기는 불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84.1퍼센트), ‘대를 잇기 위해’ 입양

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 입양 가정에서는 11.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0.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입양의 주된 동기가 입양 가정 양부모의 불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양 가정에 양부모의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국내 입양 가정의 91.8퍼센트는 양부모의 친자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외 입양의 경우엔 77.2퍼센트가 친자녀가 없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 이전에 또 다른 어린이를 입양했는지를 살펴 보면, 국내 입양 가정의 95.9퍼센트는 전혀 입양한 사실이 없으나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46.8퍼센트가 이미 한 명 이상의 입양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신청시 제시한 조건: 입양 가정의 33.8퍼센트는 입양을 신청할 때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57.7퍼센트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에 대하여 한 가지 이상이라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562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입양아의 나이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8퍼센트), 그 다음으로 입양아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48.8퍼센트).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에 제시하는 조건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 가정의 91.3퍼센트가 입양아의 성별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73.8퍼센트는 입양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국외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아의 나이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58.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입양아의 성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는 43.9퍼센트로 나타났다. 국내 입양 가정에서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성별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정 중에서 남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자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각각 41.6 및 53.9퍼센트), 여성을 입양하고자 하는 비율은 외국 입양 가정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67.1퍼센트).

입양 사설의 공개 여부: 입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내 입양의 경우엔 17.4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국외 입양의 경우는 97.1퍼센트가 공개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양아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내 입양 가정의 대부분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으나(81.0퍼센트),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입양된 사실을 입양아에게 알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98.3퍼센트). 그리고 국내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아를 양자로 입적하려는 경우가 한 건밖에 없었으며(0.5퍼센트), 나머지는 모두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97.9퍼센트). 반면에 국외 입양 가정에서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었고(0.2퍼센트), 거의 모두가 양자로 입적하고자 한다(98.9퍼센트).

입양 소요 비용: 국내 입양보다 국외 입양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경우엔 92.8퍼센트가 15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 입양의 88.2퍼센트는 입양에 소요된 비용이 1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③ 입양아에 관한 사항

입양아의 성별 분포: 입양아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0퍼센트로서 여자가 차지하는 51.0퍼센트보다 2퍼센트 포인트 낮다. 특히 국내 입양의 경우 남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남자 어린이가 더 많이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양아의 나이: 입양되는 당시의 입양아의 평균 나이는 6.4개월인데,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국외 입양보다 더 어리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 5.4 및 6.8개월). 특히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된 어린이의 60.5 퍼센트가 태어난 지 2개월 이전에 입양되고 있고, 국외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아의 74.1퍼센트가 태어난 지 3개월부터 6개월사이에 입양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외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태어난 후 곧바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이 신생아나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사실을 숨기고 친생자인 것처럼 기르려 하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기르는 편이 정이 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그리고 입양이 입양아가 태어난 지 6개월이내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입양아가 대부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양 대상 요인: 입양되는 어린이의 대부분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인데(84.6퍼센트), 유기된 어린이는 6.4퍼센트, 그리고 친부모가 입양을 의뢰한 경우는 9.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입양아 중에서 호적을 보유한 상태로 입양되는 경우는 12.9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83.8퍼센트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입양되어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의 친자녀로 호적에 등재된다.

입양아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23.9퍼센트는 신체 및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 중에는 31.9퍼센트가 신체 및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6.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④ 친모에 관한 사항

친모의 신원 확인 여부: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입양 일선 기관에 의하여 친모의 신원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경우는 9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에 의하여 입양 대상 어린이가 된 경우에는 친모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친모의 나이: 친모에 관한 정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569명에 대한 친모의 평균 나이는 23.0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혼모 중의 39.8퍼센트는 20세 이전에 아기를 분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와의 관계: 미혼모가 입양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관계한 남성은 주로 애인이거나(32.8퍼센트) 친구 또는 직장 동료였다고 대답하고 있는데(31.4퍼센트),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도 11.8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친모의 기타 특성: 친모들 중에서 60.6퍼센트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5.6퍼센트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62.2퍼센트는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16.3퍼센트(84명)는 학생의 신분에 있으면서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335명의 친모들 중에서 32.8퍼센트는 공장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사무직 종사자가 30.7퍼센트,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2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친모의 가정 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신원이 확인되는 569명의 친모들 중에서 72명(12.7퍼센트)은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모들 중에서 임신 당시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는 4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친모의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는 68.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퍼센트는 결손된 가

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중에서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하기 이전에 또 다른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25.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모의 84.1퍼센트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임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임신이 되고 난 후에 '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 유산을 시키지 않은 경우가 38.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신의 사실은 알았으나 처리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유산을 시키지 않은 경우도 19.0퍼센트를 차지한다.

⑤ 친부에 관한 사항

친부의 신원 확인 여부: 조사 기간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의 친부에 대한 신원이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파악되고 있는 경우는 74.0퍼센트이다. 그러나 친부의 신원이 완전히 알려지는 경우는 12.1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특히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 대상아가 된 경우에 친부의 신원이 파악되는 비율은 전체 입양아의 7.7퍼센트가 되고 있다.

친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지고 있는 452명의 친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친부의 평균 연령은 25.7세이고, 20세 미만의 친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친부의 59.3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7.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입양아의 친부 중에서 50.6퍼센트는 미혼모가 임신을 할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14.7퍼센트는 학생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⑥ 양부모에 관한 사항

양부모의 나이: 양모의 나이가 35-40세 사이에 있는 가정에서 입양을 가

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4퍼센트). 국외 입양 가정의 양모 나이가 국내 입양 가정의 양모 나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경우는 양모의 나이가 35-40세인 경우가 37.9퍼센트이고, 30-35 세인 경우는 33.8퍼센트인데 반해서 국외 입양의 경우는 양모의 나이가 35-40세인 경우가 4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35세 집단과 40세 이상의 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각각 24.9 및 23.3퍼센트). 그리고 양부의 나이가 35-40세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40.8퍼센트),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경우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각각 35.4 및 43.4퍼센트).

결혼 기간: 결혼 후 5-10년 사이에 입양하는 비율이 40.4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15년 사이에 입양하는 가정이 36.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을 구분하면, 국내 입양의 경우는 결혼 후 5-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입양을 하지만(45.1퍼센트) 국외 입양은 결혼 후 10-15년이 된 가정으로 가장 많이 입양되고 있다(40.5퍼센트).

양부의 형제 관계: 독자이거나 장남인 경우가 전체 양부의 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차남 이하이거나 형제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양부모의 교육 수준: 양모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국내 입양 가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수준이 가장 많아 전체 입양 가정의 57.4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양부의 학력 수준은 국내 입양 가정의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이 56.9퍼센트로 가장 많으나, 국외 입양 가정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8.4퍼센트를 차지한다

양모의 경제 활동 여부: 국내 입양 가정의 양모들 중에서는 33.8퍼센트 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양모의 비율이 77.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양부의 직업: 국내 입양의 경우엔 양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36.4퍼센트), 국외 입양의 경우엔 양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입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6퍼센트).

입양 가정의 가구 소득: 입양 가정의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국내 입양 가정이 8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외 입양 가정의 경우엔 200만원 이상인 가정이 92.8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第 2 節 우리나라 入養의 問題點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 아래서 우리나라는 1992년 말 현재까지 모두 176,229명의 어린이를 국내 및 국외의 가정에 입양시켰다. 그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127,617명(72.4퍼센트)이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는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입양 대상 아동을 국내의 가정에서 입양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입양의 대부분을 외국의 가정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불명예는 우리나라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를 지키지 못(해)...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빙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국외 입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아직까지도 요보호 아동의 상당수를 외국의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다는 것 외에도 입양 정책의

미비, 입양아의 사후 관리 부재, 그리고 입양 관련법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國內 入養의 低調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은데,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조상 숭배와 제사 상속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양자제도의 배경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고, 이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 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국내의 보호 시설이나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가정에 이들을 입양시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양은 국외 입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유포호 아동은 거의 없어지고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어린이가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에도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혈연중심의 가족 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 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서 찾기도 하고(장인협·오정수, 1993: 344),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혈연에 의한 가계 승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혈액형, 용모,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보건사회부, 1991: 330).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뒷바침 해 주는 뚜렷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국내 입양 활성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실제의 조사에서 ‘대를 잇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국내 입양은 전체 국내 입양의 11.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김근조(1987b)와 최경석(198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입양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가의 계승’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회 서비스’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국내 입양 가정에서도 오히려 여아가 선호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변화를 뒷바침해주는 자료가 된다.

장애 아동에 대하여 국내 가정에서는 입양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23.9퍼센트는 신체 및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 중에는 31.9퍼센트가 신체 및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6.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체 및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국내 가정으로는 ‘전혀’ 입양되지 않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바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2. 入養 政策의 頻繁한 變更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로 시작된 입양 정책은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 및 전쟁 미망인 등을 위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후생 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1950년), 전쟁

후 급증하는 시설의 부실, 피폐 등을 방지하고 시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위해서 1952년 사회부장관의 훈령으로 '후생 시설 운영 요령'을 시달하였다. 그러나 입양에 관한 법 규정은 전혀 없었다. 단지 '후생 시설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위탁 형식의 국내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친척 입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국외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단지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국외 입양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제재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의 국외 입양이 주로 영문 번역 사무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리고 1954년 이후 원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국외 입양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외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었으며, 이에 정부는 국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1957년부터 국회에 상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의 혼란으로 국회 회기가 계속되지 못하는 탓에 상정될 때마다 폐기되다가 마침내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위한 법적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해결을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 후 고아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개인 입양이나 사적 입양에서 빚어지는 폐단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고, 또한 입양 알선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로써 국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

나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 이루어진 고아의 국내 입양 및 위탁 보호는 양부 모의 인식 부족때문에 입양 아동이 시설로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부랑아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및 위탁 보호되는 어린이들이 가사 사용인이나 단순 노동자로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정부는 '장기 위탁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해결을 국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고, 이를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선전함에 따라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실적 위주의 입양 전개와 국외 입양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책은 결국 입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크게 저해하면서, 입양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비밀보장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특히 쿼터제 실시를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적에 있어서는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의 손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해마다 발생되는 입양 대상 아동의 수, 각 입양 알선 기관의 전문 인력 규모, 그리고 기타의 국내 입양에 관련된 사회적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쿼터제의 적용은 일률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에 바탕을 두는 쿼터제를 통한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이에 정부는 1982년부터 국외 입양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1985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국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고, 오히려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라는 차원에서 국외 입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국외 입양에 대한 개방 정책이 실시되자 입양

일선 기관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어날 정도였다.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외 입양이 다시 세계 언론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세워 그동안 국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 정책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시책의 일환으로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인적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양부모의 자격 기준에서 그 연령을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불임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양 사업 개선 지침'에서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결손 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외 입양과 시설 보호의 방법을 지양하고, 대신에 국내의 견전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첫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은 국내 입양 기관의 지정과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세부 지침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외 입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5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은 갑자기 국외 입양 개방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1989년에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의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입양 가정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내 입양의 17.4퍼센트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입양아를 양자로 입적하는 경우가 0.2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3. 入養 關聯法의 未備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에서는 입양이 성립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입양 관련법에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내용이 많아 그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근조, 1987b: 168). 특히 입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부모와 입양아 간의 나이 차이, 입양 부모의 건강 상태, 입양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보호, 입양 알선에 따른 비용 보상 규정, 그리고 입양 관련 분쟁에 관한 처리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로서의 입양이 되기 위해선 입양 대상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입양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입양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김근조(1987a, 1988, 1989), 김주수(1987), 그리고 배태순(1993) 등이 잘 설명하고 있다.

4. 入養 事後 管理의 不在

입양된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입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다(전익준, 1984: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에서는 그 시행령 제7조에서 아동상담원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사후 지도’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입양 사후 관리에 대한 법조항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배태순, 1993: 12). 특히 국내 입양의 대부분이 비밀로 이루어지고,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아가 입양 가정의 친자녀로 입적되는 상황에서 는 입양된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가 '입양 알선 기관 사업 지침'을 작성하면서 입양아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도 외국의 입양 협약 기관에 의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의 입양 알선 기관이 사후 관리에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전익준, 1984).

第 3 節 政策的 提案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 아래서 우리나라는 1992년말 현재까지 모두 176,229명의 어린이를 국내 및 국외의 가정에 입양시켰다. 그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127,617명(72.4퍼센트)이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는 전체 입양아의 2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특히 1989년에는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그동안 국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 정책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외 입양 의존도는 높아서, 1992년도에도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가 전체 입양아의 6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은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안이다. 이를 위한 계획과 전략의 수립은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이다.

1. 入養 對象 兒童의 發生을豫防해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며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들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으로 정의되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우선된 대상은 요보호 아동이 되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가족의 해체와 성도덕의 붕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어린이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1992년에 발생되어진 요보호 아동은 5,020명인데, 이 중에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1,813명으로 전체 요보호 아동의 36.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3).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로는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992년에 입양된 어린이의 84.0퍼센트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혼모의 수는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3: 198).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배태순(1993: 9)은 미혼모의 어린이가 “암시장”으로 불리는 입양 알선 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조

산소나 산부인과에 의해 입양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을 뿐 입양 대상 아동의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2. 家庭 保護가 施設 保護에 우선해야 한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일차적인 중심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가정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또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오히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만 사회적 보호 조치로서 시설 보호를 하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 가정 생활을 누릴 권리,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의 아동복지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아동복지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가정 환경안에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에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정 환경과 가정의 사랑은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보호는: ① 성격 형성을 위한 오락이나 집단 경험의 결여, ②

아동 분류의 부적절, ③ 교육적 대책, 특히 직업 훈련의 불비, ④ 시설 인가, 감독, 실제 지도면의 부족, ⑤ 인사, 재정, 감독 절차 등의 행정적 미숙, ⑥ 훈련된 직원의 부족, 그리고 ⑦ 불충분한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 이들에게는 다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입양 대상 아동들을 시설에서 보호하겠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질 필요가 있다.

3. 國內 入養을 活性化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입양제도는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외 입양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은 거의 없어지고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어린이가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에도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의 한 프로그램이 된다. 따라서 입양이는 태어난 가정과 가장 비슷한 상황의 가정에 가장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특성 등은 어린이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와 정상적 가정 생활을 누릴 권리가 쉽게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국내의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혈연중심의 가족 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 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서 찾기도 하고(장인협·오정수, 1993: 344),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혈연에 의한 가계승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의 혈액형, 용모,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원하고 있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보건사회부, 1991: 330).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뒷바침해 주는 뚜렷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국내 입양 활성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실제의 조사에서 ‘대를 잇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국내 입양은 전체 국내 입양의 11.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김근조(1987b)와 최경석(198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입양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가의 계승’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회 서비스’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국내 입양 가정에서도 오히려 여아가 선호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변화를 뒷바침해 주는 자료가 된다.

장애 아동에 대하여 국내 가정에서는 입양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23.9퍼센트는 신체 및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 중에는 31.9퍼센트가 신체 및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6.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뒷바침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및 건강 상의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국내 가정으로는 ‘전혀’ 입양되지 않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바침 하지는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내 입양의 활성화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3,2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3). 이러한 실적은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국내 입양의 실적과 비교될 수가 있다. 김근조(1989: 238)의 연구에 의하면, 1981년에 국내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3,267명으로, 지난 해에 국외 및 국내 가정으로 입양된 모든 어린이보다도 32명이 더 많다. 국내 입양의 실적은 1982년의 경우엔 더욱 늘어나 3,289명의 어린이가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에 국내 입양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국외 입양을 제한한 결과로 여겨진다. 실적 위주의 국내 입양 정책과 국외 입양에 대한 쿼터제 적용 등을 통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많이 증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계획 요원과 전화 상담원 등의 비전문가를 입양 추진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에게 실적 위주의 입양 사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크게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외 입양을 하는 입양 알선 기관별로 일정 건수의 국내 입양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국내 입양의 실적에 따라 국외 입양을 할당해 주는 방법으로 쿼터제를 적용함으로써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의 손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집계되고 있는 국내 입양의 실적에서 국내 입양 활성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를 잊고자'하는 입양의 동기가 전체 국내 입양 가정의 11.3퍼센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사실과 국내 입양 가정에서 남아보다는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때 까지 국내 입양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혈연에 의한 가계 승계의 전통적 가치관이 실제의 입양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의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침의 정당성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를 지키지 못(해)...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빙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되고 만다’(조선일보, 1990년 11월 27일자)는 논리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어린이들은 국외의 가정에서보다는 국내의 가정에서 보다 건전하게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만 한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의 수립은 국내의 불임 가정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입양 가정의 84.6퍼센트가 ‘불임’을 입양의 주된 동기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불임 가정은 국내 입양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수요가 되며, 이들 가정의 입양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입양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이 수립될 수가 있다.

연구진은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 불임 가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과제를 1994년에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임 가정의 입양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요보호 아동에 대해 어떠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우선 해야만 한다.

참 고 문 헌

- 가톨릭신문사. 1993. 가톨릭신문 2월 28일자.
- 구 자헌. 1984.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흥익재.
- 국회사무처. 1992.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 권 정희. 1993. “양자법의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김 근조. 1987a. “합법적 입양의 성립 요건과 전문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국내 입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10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Pp. 291-330.
- . 1987b. “국내 입양의 관행과 전문적 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 제 2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56-170.
- . 1988. “입양의 성립 요건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연구회, Pp. 23-43.
- . 1989. “요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한 인식과 태도 조사 연구—국내 입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12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Pp. 231-291.
- 김 만석. 1981. “입양을 위한 의식 구조 변화와 입양관계법 소고”, 「아동복지」, 통권 34호, 흘트아동복지회, Pp. 19-28.
- 김 승권. 1992. “한국 미혼남녀의 성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전국 출산력 조사 특별 분석」, Pp. 1-39.
- 김 우덕. 1987. “양자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김 주수. 1981. “입양에 관한 법 고찰”, 「아동복지」, 통권 34호, 흘트아동복지회, Pp. 13-16.
- . 1985. “양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上”, 「사법행정」, 5월호, 한국

- 사법행정학회, Pp. 57-65.
- . 1987.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한국사회복지회」, 제 2집, Pp. 132-143.
- 김 창희. 1985. “양자제도에 관한 연구-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 학길. 1988. “국내입양요소의 특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3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 131-149.
- 김 한규. 1983. “우리나라 미혼모 문제와 대책”, 「아동복지」, 겨울호, 홀트 아동복지회, Pp. 13-20.
- 박 영옥. 1987. “미혼모의 발생 요인과 대책 방안”, 「홀트소식」, 겨울호, 홀트아동복지회, Pp. 6-8.
- 방 호선. 1988. “불우 어린이와 입양 사업”, 「홀트소식」, 여름호, 홀트아동복지회, Pp. 10-13.
- 보건사회부. 1981. 「보건사회」.
- . 1982. 「보건사회」.
- . 1986. 「보건사회」.
- . 1989. 「보건사회백서」.
- . 1990. 「보건사회백서」.
- . 1991. 「보건사회백서」.
- . 1993a. 「보건사회 통계 연보」.
- . 1993b. 보건사회부 내부자료.
- 복지연구회. 1984. 「현대아동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배 태순. 1990. “입양 서비스와 가족 체계 이론”, 「한국사회복지학」, 한국 사회복지학회, Pp. 74-105.
- . 1993. “국내 입양 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아동복

- 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창간호, Pp. 1-22.
- 성 영혜. 1993. 「아동복지」, 서울 : 학문사.
- 손 의목. 1988. “아동복지 행정 40년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 11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Pp. 3-56.
- 원 영희. 1990. “한국 입양 정책에 관한 연구-전개 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학위논문.
- 이 명홍. 1983. “미혼 부모에 대한 예방적 접근책”, 「아동복지」, 봄호, 홀트아동복지회, Pp. 6-17.
- 이 봉. 1976. “양자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이 지숙. 1982. “입양 사업의 정책 방향”, 「아동복지」, 봄호, 홀트아동복지회, Pp. 22-25.
- . 1993. “아동과 입양”, 「아산」, 하계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p. 20-25.
- 장 인협. 1985. 「아동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 인협, 오 정수. 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 익준. 1984. “해외 입양의 구성 요소와 사후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정 일교, 유 영수. 1992. “아동복지 시설 근무자의 의식구조 실태 조사 연구”, 「사회복지」, 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 89-130.
- 조선일보사. 1990. 조선일보 11월 27일자.
- 최 경석. 1987. “국내 입양 아동과 가정”, 「한국사회복지학」, 제 2집, 한국 사회복지학회, Pp. 144-155.
- 탁 연택. 1972. “현대적 입양의 성격과 문제점”,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20(3), Pp. 18-27.
- . 1986. “새로운 시각에서 본 입양”, 「사회복지학회지」, 제 8호, 사

- 복지학회, Pp. 209-232.
- 한국법령편찬회. 1969.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제 3권. Pp. 135-137.
- . 1981.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제 3호. Pp. 11-117.
- 한국법제연구원. 199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7권. Pp. 343-365.
- 한국부인회. 1992. “미혼모 실태와 미연 방지에 관한 세미나”.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 허 남순. 1974. “국내 입양 사업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 1986.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회지」, 제 8호, 사회복지학회, Pp. 107-133.

- Bachrach, Christine A., Kathy Shepherd Stolley and Kathryn A. London. 1992. “Relinquishment of Premarital Births: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 Data”,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4(1), Pp. 27-32.
- Bachrach, Christine A., Kathryn A. London and Penelope L. Maza. 1991. “On the Path to Adoption: Adoption Seek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Aug.), Pp. 705-718.
- Cole, Elizabeth S. 1985. “Adoption: History, Policy, and Program”, *A Handbook of Child Welfare*, edited by Joan Laird and Ann Hartman, New York: The Free Press. Pp. 638-666.
- Cooksey, Elizabeth C. 1990. “Factors in the Resolution of Adolescent Premarital Pregnancies”, *Demography* 27(2), Pp. 207-218.

- Fraser, Mark W., Peter J. Pecora, and David A. Haapala. 1991. *Families in Crisi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Gil, David G. 1985. "The Ideological Context of Child Welfare", *A Handbook of Child Welfare*, edited by Joan Laird and Ann Hartman, New York: The Free Press. Pp. 11-33.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3. Final Act of Seventeenth Session,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Netherland, 29th May, 1993.
- Kalmuss, Debra. 1992. "Adoption and Black Teenagers: The Viability of a Pregnancy Resolution Strate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Aug.), Pp. 495-495.
- Kalmuss, Debra., Pearila B. Namerow and Ursula Bauer. 1992. "Short-term Consequences of Parenting Versus Adoption among Young Un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Feb.), Pp. 80-90.
- Laird, Joan and Ann Hartman (eds.). 1985.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The Free Press.
- Leibowitz, Arleen, Marvin Eisen and Winston K. Chow. 1986. "An Economic Model of Teenage Pregnancy Decision-Making", *Demography* 23(1), Pp. 67-77.
- Levine, Murray and Adeline Levine. 1992. *Helping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ndberg, Shelly and Robert D. Plotnick. 1990. "Effect of State Welfare, Abortion and Family Planning Policies on Premarital Childbearing Among White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2(6), Pp. 246-251.
- McLaughlin, Steven D., Diane L. Manninen and Linda D. Wings. 1988. "Do Adolescents Who Relinquish Their Children Fare Better or Worse Than Those Who Raise Them?",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0(1), Pp. 25-32.
- Pecora, Peter J., James K. Whittaker, Anthony N. Maluccio with Richard P. Barth and Robert D. Plotnick.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lotnick, Robert D. 1992. "The Effects of Attitudes on Teenage Premarital Pregnancy and its Resolution", 57(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800-811.
- Westoff, Charles F. 1988. "Contraceptive Paths toward the Reduction of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1), Pp. 4-13.
- Westoff, Charles F. 1988. "Unintended Pregnancy in America and Abroad",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0(6), Pp. 254-261.
- Zuckerman, Erva. 1983. *Child Welfare*, New York: The Free Press.

<부 록>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

기관번호	조사대상번호

입양구성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양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밀이 지켜지게 됩니다.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입양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작성지침서」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한 날짜	1993년 월 일
작성한 기관	
사람 성명	

1993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1. 생년월일	19____년 ____월 ____일 (*추정의 경우: 생후____년 ____월)
2.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3. 출생한 장소	<input type="checkbox"/>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조산소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4. 맨 처음 수용되었던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조산시설 <input type="checkbox"/> 영아시설 <input type="checkbox"/> 교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육아시설 <input type="checkbox"/> 위탁양육가정 <input type="checkbox"/> 아동일시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서장애아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직업보도시설
5. 보호시설에 수용된 날짜	19____년 ____월 ____일
6. 보호시설에 수용을 의뢰한 사람 (해당 사항 모두 측정 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친모 <input type="checkbox"/> 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친부 <input type="checkbox"/> 파출소 <input type="checkbox"/> 친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nput type="checkbox"/> 친부의 친척
7.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유 (해당 사항 모두 측정 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기아 <input type="checkbox"/> 친부모의 입양 의뢰 <input type="checkbox"/> 부랑아 <input type="checkbox"/> 친부모의 친권 상실 <input type="checkbox"/> 미혼모의 자녀
8. 입양에 동의한 사람 (해당 사항 모두 측정 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친모 <input type="checkbox"/> 계모 <input type="checkbox"/> 친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친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친부의 친척
9. 입양에 동의한 날짜	19____년 ____월 ____일

10. 신체 및 건강상의 이상 여부 (해당 사항 모두 툐 표시하십시오)	①□이상 없음 ⑧□결핵 ②□지체장애 ⑨□피부질환 ③□시각장애 ⑩□비형간염 ④□청각장애 ⑪①□언청이 ⑤□언어장애 ⑪②□미숙아 ⑥□정신지체 ⑪③□골격계 기형 ⑦□심장질환 ⑪④□기타(구체적으로: _____)
11. 입양전의 호적	①□유적아 ②□무적아 ③□미확인
12. 입양된 날짜	19____년 ____월 ____일
13. 파양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①□파양된 적이 없음 (*파양된 적이 있는 경우, 파양된 날짜는? 19____년 ____월 ____일) ②□파양된 적이 있음
14. 입양된 나라	①□국내 ②□국외(구체적으로: _____)
15. 입양되기 전 마지막으로 수용되었던 보호시설	①□아동상담소 ⑥□조산시설 ②□영아시설 ⑦□교호시설 ③□육아시설 ⑧□위탁양육가정 ④□아동일시보호시설 ⑨□정서장애아시설 ⑤□아동직업보도시설

II. 친부모에 관한 사항

	친모	친부
1. 신원 확인 여부	①□ 확인 ②□ 부분적으로 확인 ③□ 확인이 불가능함 (*친모에 관한 자료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양부모에 관한 사항'으로 넣어 가십시오)	①□ 확인 ②□ 부분적으로 확인 ③□ 확인이 불가능함 (*친부에 관한 자료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양부모에 관한 사항'으로 넣어 가십시오)
2. 생년월일	19____년 ____월 ____일 (*추정의 경우: 약 ____세)	19____년 ____월 ____일 (*추정의 경우: 약 ____세)
3. 입양아를 임신할 당시의 혼인상태	①□ 초혼-배우자와 동거 ②□ 초혼-배우자와 별거 ③□ 재혼-배우자와 동거 ④□ 재혼-배우자와 별거 ⑤□ 사별 ⑥□ 이혼 ⑦□ 미혼-동거 ⑧□ 미혼 ⑨□ 확인이 불가능함	①□ 초혼-배우자와 동거 ②□ 초혼-배우자와 별거 ③□ 재혼-배우자와 동거 ④□ 재혼-배우자와 별거 ⑤□ 사별 ⑥□ 이혼 ⑦□ 미혼-동거 ⑧□ 미혼 ⑨□ 확인이 불가능함
4. 입양아를 분만할 당시의 혼인상태	①□ 초혼-배우자와 동거 ②□ 초혼-배우자와 별거 ③□ 재혼-배우자와 동거 ④□ 재혼-배우자와 별거 ⑤□ 사별 ⑥□ 이혼 ⑦□ 미혼-동거 ⑧□ 미혼 ⑨□ 확인이 불가능함	①□ 초혼-배우자와 동거 ②□ 초혼-배우자와 별거 ③□ 재혼-배우자와 동거 ④□ 재혼-배우자와 별거 ⑤□ 사별 ⑥□ 이혼 ⑦□ 미혼-동거 ⑧□ 미혼 ⑨□ 확인이 불가능함
5. 친부모의 관계	①□ 배우자 ⑥□ 친척 ②□ 동거자 ⑦□ 모르는 사람 ③□ 애인 ⑧□ 기타 ④□ 직장 동료 ⑨□ 확인이 불가능함 ⑤□ 친구	

6. 종교	①□부종교 ②□불교 ③□개신교 ④□천주교 ⑤□유교 ⑥□원불교 ⑦□천도교 ⑧□기타(구체적으 흐 :)	①□부종교 ②□불교 ③□개신교 ④□천주교 ⑤□유교 ⑥□원불교 ⑦□천도교 ⑧□기타(구체적으 흐 :)
7. 학력	①□국민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전문대 ⑤□대학(교) ⑥□대학원 ⑦□미확인	①□재학 ②□중퇴 ③□졸업 ④□전문대 ⑤□대학(교) ⑥□대학원 ⑦□미확인
8. 입양아를 임신할 당시의 경제활동 상태	①□피고용인 ②□자영업주 ③□고용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⑤□실업자-구직중 ⑥□실업자-비구직중 ⑦□학생 ⑧□가사 ⑨□군복무 ⑩□기타(구체적으 흐 :)	①□피고용인 ②□자영업주 ③□고용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⑤□실업자-구직중 ⑥□실업자-비구직중 ⑦□학생 ⑧□가사 ⑨□군복무 ⑩□기타(구체적으 흐 :)
9. 직업 (구체적으 흐)		
10. 소득	월 평균 _____ 만원	월 평균 _____ 만원

III. 친모에 관한 사항

1. 임신시의 거주지	_____도(특별시, 직할시) _____군(시, 구)			
2. 거주 기간	19_____년 _____월부터(년 개월간)			
3. 거주 형태	<input type="checkbox"/> 혼자서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산 경우, 함께 산 사람은? 해당 사항 모두를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직장동료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4. 부모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친부와 친모 <input type="checkbox"/> 친부와 계모 <input type="checkbox"/> 계부와 친모 <input type="checkbox"/> 친부만	<input type="checkbox"/> 친모만 <input type="checkbox"/> 계부만 <input type="checkbox"/> 계모만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형제 관계	오빠: _____명 남동생: _____명	언니: _____명 여동생: _____명		
6. 임신 및 출산력	임신: _____회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총 출산아 중) 출산: _____명 사산: _____회 인공유산: _____회	양육: _____명 기관: _____명 사망: _____명
7. 입양아 임신 당시 피임법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비사용	(*사용한 경우, 사용한 방법은?) <input type="checkbox"/> 자궁내 장치 <input type="checkbox"/> 먹는 피임약 <input type="checkbox"/> 콘돔 <input type="checkbox"/> 살(질)정제 <input type="checkbox"/> 월경주기법 <input type="checkbox"/> 질외 사정법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인공유산을 시키지 않은 이유	<p>① <input type="checkbox"/>임신사실을 몰라서 ② <input type="checkbox"/>처리방법을 몰라서 ③ <input type="checkbox"/>아이를 낳고 싶어서 ④ <input type="checkbox"/>인공유산을 시킬 돈이 없어서 ⑤ <input type="checkbox"/>의사가 출산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⑥ <input type="checkbox"/>기타(구체적으 흐: _____)</p>
-----------------------	---

IV. 양부모에 관한 사항

	양모	양부	
1. 국적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외국(나라명: _____)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외국(나라명: _____)	
2. 생년월일	19____년 ____월 ____일 (*추정의 경우: 약 ____세)	19____년 ____월 ____일 (*추정의 경우: 약 ____세)	
3. 혼인 상태	<input type="checkbox"/> 초혼-배우자와 동거 <input type="checkbox"/> 초혼-배우자와 별거 <input type="checkbox"/> 재혼-배우자와 동거 <input type="checkbox"/> 재혼-배우자와 별거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동거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확인이 불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초혼-배우자와 동거 <input type="checkbox"/> 초혼-배우자와 별거 <input type="checkbox"/> 재혼-배우자와 동거 <input type="checkbox"/> 재혼-배우자와 별거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동거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확인이 불가능함	
4. 결혼한 날짜	19____년 ____월 ____일	19____년 ____월 ____일	
5. 종교	<input type="checkbox"/> 무종교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유교 <input type="checkbox"/> 원불교 <input type="checkbox"/> 천도교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nput type="checkbox"/> 무종교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유교 <input type="checkbox"/> 원불교 <input type="checkbox"/> 천도교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학력	<input type="checkbox"/>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7. 입양을 신청할 당시의 경제활동상태	①□피고용인 ②□자영업주 ③□고용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⑤□실업자-구직중 ⑥□실업자-비구직중 ⑦□학생 ⑧□가사 ⑨□군복무 ⑩□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피고용인 ②□자영업주 ③□고용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⑤□실업자-구직중 ⑥□실업자-비구직중 ⑦□학생 ⑧□가사 ⑨□군복무 ⑩□기타(구체적으로 : _____)
8. 입양신청당시의 직업(구체적으로)		
9. 소득	월 평균 _____ 만원	월 평균 _____ 만원
10. 양육에 관련된 교육의 이수 여부	①□교육을 받았음 ②□교육을 받지 않았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시간은?) 총 _____ 시간)	①□교육을 받았음 ②□교육을 받지 않았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시간은?) 총 _____ 시간)

V. 입양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입양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양부 <input type="checkbox"/> 양부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양모 <input type="checkbox"/> 양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양부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양모의 부모 _____)	
2. 입양에 대하여 동 의한 사람 (해당사항 모두를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양부 <input type="checkbox"/> 양부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양모 <input type="checkbox"/> 양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양부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양모의 부모 _____)	
3. 입양 신청일	19 ____년 ____월 ____일	
4. 입양을 신청할 때 제시한 조건 (해당사항 모두를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친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친모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혈액형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외모 <input type="checkbox"/> 입양아의 출생일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입양아의 성별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 우, 조건으로 제시된 성별은?)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5. 입양 진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양부모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양부모의 친척에게만 공개) <input type="checkbox"/> 공개(양부모의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	
6. 입양 동기 (해당사항 모두를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불임 가정 <input type="checkbox"/> 대를 잇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불우아동을 돋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친자에게 형제가 필요해서 <input type="checkbox"/> 가정이 쓸쓸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불임 가정의 경우, 불임의 원인은?) <input type="checkbox"/> 남편 <input type="checkbox"/> 아내 <input type="checkbox"/> 부부
7. 양부의 형제 관계	<input type="checkbox"/> 외동 아들 <input type="checkbox"/> 장남 <input type="checkbox"/> 차남 및 그 이하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 分析

1993年 12月 日 印刷
1993年 12月 日 發行

發行人 李 晟 雨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番42-14

電 話 355-8003 ~ 7

印刷處 大明文化社

電 話 263-1292 ~ 3
